연구보고서 16-05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6-05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6-05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인 쇄	2016년 12월 26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유월애 02) 859-2278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620-1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언

최근 세계 경제는 다양하고 시급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딘 세계 경기 회복과 무역성장세 둔화는 수출을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에 더 많은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와 투자 확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 관세감축 위주였던 통상 협정에서 점차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보고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최근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이후 체결된 협정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규제완화를 계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규제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한국의 경우 얼마나 부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김종덕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조문희 부연구위원, 엄준현 전문연구원, 그리고 정민철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종덕 부연구위원이 전반적인 과제를 기획하고 이론적 설명과 서비스 분야 규제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주관하였으며, 조문희 부연구위원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엄준현 전문연구원은 한국의 서비스 분야에서의 제도, 규제의 법률적 점검을 맡았으며, 정민철 연구원은 서비스 분야의 무역 현황 및 규제의 데이터화 작업에 수고해 주었습니다.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문위원을 맡아주신 김준동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원외 심의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성한경 교수, 산업연구원 문종철 박사, 법무부 고영로 전문위원, 원내 심의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황운중 부연구위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정택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회계·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분야에서는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차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3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 18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 21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 22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5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 31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 32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 34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 35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 43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 45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 83

1. 분석모형 ····· 84
2. 분석자료 ····· 87
3. 분석 결과 ····· 9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01**

1. 요약 ····· 102
2. 정책적 시사점 ····· 104

참고문헌 ····· **107**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 **111**

Executive Summary ····· **119**

표 차례

표 1-1. 해외직접투자 관련 최근 주요 선행연구 ····· 14
표 1-2.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 19
표 2-1. 국가 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 22
표 2-2. 기업 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 23
표 2-3. 지역·국가별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5
표 2-4. 한국의 기간별 및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 28
표 4-1. 한-미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 54
표 4-2. 한-EU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 64
표 4-3. 한-호주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 71
표 4-4. 한-캐나다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 75
표 4-5. 한-EFTA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 78
표 4-6. 한-뉴질랜드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 81
표 5-1. 기체결 FTA를 반영하여 수정된 분야별 STRI ····· 89
표 5-2. 변수 단위와 자료 출처 ····· 91
표 5-3. 변수와 기초통계량 ····· 92
표 5-4. 분산-공분산 행렬 ····· 93
표 5-5.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 96
표 5-6.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 98
표 5-7.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대안 모형 ····· 99
표 5-8.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대안 모형 ····· 100

그림 차례

그림 2-1.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 29
그림 2-2. 투자 형태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 30
그림 3-1. 해외투자의 종류 ····· 33
그림 3-2. 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의 의사결정 ····· 41

부록 그림

부록 그림 1-1. 법률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 114
부록 그림 1-2. 회계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 114
부록 그림 1-3. 통신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 115
부록 그림 1-4. 은행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 115
부록 그림 1-5. 보험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 116
부록 그림 1-6. 로지스틱스 통관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 116
부록 그림 1-7. 로지스틱스 저장 및 보관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 (STRI 2015) ····· 117
부록 그림 1-8. 로지스틱스 수화물 처리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 (STRI 2015) ····· 117
부록 그림 1-9. 로지스틱스 화물 이송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 (STRI 2015) ····· 118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이후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를 포함하여 2016년 말 현재 총 5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다.[1] 적극적인 FTA 추진은 개방의 이익에 대한 신념이 다양한 증거들과 함께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며, 단순히 상품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개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고 서비스 분야 개방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FDI의 흐름 변화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 부문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투자 확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입요인 분석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관세 외에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세계적인 성장률 둔화와 소득불평등 문제의 부상 등으로 무역과 개방

1) 세계무역기구(WTO)상의 용어로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과 같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에 대한 반대정서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 기존과 같은 빠른 자유화 논의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추진과 함께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엄정하고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며 앞으로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난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상당히 많다. 특히 거시적 측면에서 바라본 투자에 따른 자본수익보다는 무역과의 경제적 관계로 바라본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연구가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관련된 많은 논문 중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의미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무역과 FDI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Brainard(1993, 1997)의 논문이 대표적으로, 저자는 논문에서 무역과 해외투자에 대해 '근접성-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이론적 바탕과 함께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Brainard의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기초가 되는 연구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최근 무역이론은 기존의 기업간 동질성을 가정한 연구에서 벗어나 이질적 기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야에서도 기업 수준 분석을 위한 연구가 상당한 이론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무역에 있어 기업 수준의 연구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은 Krugman(1980)을 기반으로 이질적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해 선도적인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 논문은 기업의 이질성을 생산성 기준으로 정의하

였는데 산업 내 기업간에 일정한 생산성 분포가 존재할 때 어떤 기업이 국내 기업, 수출 기업, 또는 해외 진출 기업이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FDI와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제3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한다.

표 1-1. 해외직접투자 관련 최근 주요 선행연구

		선행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Between Multinational Sales and Trade - 연구자(저널,연도): Brainard(AER, 1997) - 연구목적: 수출과 FDI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통계분석 - 산업분석 - 계량분석	- 1989년 27개국 횡단면 자료 이용하여 실증 분석 - SIC 3 단위 자료가 사용됨. - 본 논문은 간단한 이론모형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proximity-concentration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함.
	2	- 과제명: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 연구자(저널, 연도): Helpman *et al.* (JIE, 2004) - 연구목적: 이질성이 존재하는 기업의 수출과 FDI 간의 의사결정 연구	- 이론분석 - 통계분석	- 기업 수준의 생산성에 따른 수출과 FDI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 미국 52개 제조업 분야에서 38개국과의 무역자료 활용 - 기업의 생산성 측면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FDI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론적으로 밝히고 통계자료 근거를 제시함.
	3	- 과제명: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Investmen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 - 연구자(기관, 연도): Lesher and Miroudot(OECD, 2006) - 연구목적: 지역무역협정 투자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통계분석 - 투자협정문 분석 - 계량분석	- 2005년까지 이루어진 전 세계 24개 FTA 투자협정문을 비교하여 지수화함. - 중력모형 분석에 지수화된 투자협정문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

표 1-1. 계속

		선행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4	- 과제명: Do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Lead to More FDI? - 연구자(기관, 연도): Berger *et al.* (WTO, 2010) - 연구목적: 지역무역협정 주요 투자 관련 규정의 효과 분석	- 통계분석 - 투자협정문 주요 내용 분석 - 계량분석	- 197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체결된 RTA와 BIT를 중심으로 MFN, NT 조항과 ISD 조항을 회귀분석 모형에 중점적으로 고려
	5	- 과제명: 무역 및 투자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연구자(기관, 연도): 김종덕 외(KIEP, 2013) - 연구목적: FTA 등을 통한 투자협정상의 변화가 FDI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분석 - 투자협정 분석	- 한국이 최근 맺은 8개의 FTA 협정 중 투자협정을 계량화하고 FDI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SD 설립 전 투자 보호 등의 항목에 대한 영향 점검
	6	- 과제명: FTA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 연구자(기관, 연도): 문종철 외(KIET, 2011) - 연구목적: FTA의 FDI에 대한 영향을 분석	- 통계분석 - 사례연구	- FTA 체결 이후 OFDI와 IFDI 변화를 산업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 -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 사용
	7	- 과제명: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자(기관, 연도): 배찬권 외(KIEP, 2012) - 연구목적: FTA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 평가	- 통계분석 - 사례연구 - 계량분석	- FTA 체결 이후 경제적 영향분석의 일부로 투자 부문의 영향 분석 - 기존에 비해 개선된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 사용

위에서 논의된 학술적 연구에서 무역과 FDI 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교역으로 발생하는 가변비용과 FDI를 위해 발생하는 고정비용의 대체관계이다. 하지만 어떤 요인이 교역비용이나 FDI를 위한 고정비용에 얼마나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가는 실증 연구의 몫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실제로 FTA의 협정문이나 투자협정문에 기술된 내용이 지수화되어 분석에 사

용된 연구들을 비롯한 다양한 실증 분석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의 산업 제도나 통상 관련 법령 등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유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과 같은 통상 협정문을 분석·지수화하는 방식으로 계량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Lesher-Miroudot(2006)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2005년까지 체결된 전 세계 24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투자 부문 협정의 주요 내용을 지수화하여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자유무역협정 내에서의 투자 부문 협정은 해외직접투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ger *et al.*(2010)도 협정문의 주요 조항이 FDI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ment)'과 '설립 전 내국민 대우(NT: 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ISDS의 포함 여부는 FDI의 흐름 증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립 전 내국민 대우의 경우 FDI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대 중후반부터 증가하였다. 문종철 외(2011)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해외투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더미변수 등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배찬권 외(2012)의 연구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경제적 영향 평가의 일부로 해외투자 부분을 분석하였다. 문종철 외(2011)와 배찬권 외(2012) 모두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한 2000년대 후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위의 연구들은 계량적 분석에서 FTA 체결의 효과를 FTA 더미만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추가적 연구의 여지를 남겼다. 김종덕 외(2013)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진출(outward FDI)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성·무역·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이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부분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세부항목

에 대한 개방 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투자 부분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투자자 간 분쟁해결 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은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먼저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FDI 유입의 관계라는 기존의 보고서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려 한다. 무역과 해외투자 간의 '근접성-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결국은 무역으로 인한 가변비용과 FDI를 위한 고정비용의 관계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가변비용은 관세 등의 변동에 따른 변화로 설명해왔다. 반면 고정비용 측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며 특히 규제라는 차원의 고정비용은 분석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OECD가 2014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이용하여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계량화하였는데 OECD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이 체결한 다양한 FTA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도출하였다. 셋째, FTA가 발효된 시점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STRI 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미국, EU 등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들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 개방을 이루어왔으며 이에 대한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들 FTA가 각각 다른 시기에 체결되었으며 이러한 시점의 차이가 FDI 흐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데이터 구축과 분석에 반영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보고서의 연구 주제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 이를 통한 개방이 한국의 서비스 및 제조업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위하여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OECD STRI가 최혜국(MFN: Most-Favored-Nation) 대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한국과 같이 F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유화를 추구해 온 국가의 경우 최혜국 대우 기준의 개방 수준 측정치는 오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최근의 FTA를 반영하여 STRI를 재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과 개방이 서비스 및 제조업 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급속한 세계화와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한국의 투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지속적인 증가가 있어왔으나 한국의 FDI 유입은 비슷한 경제 규모(GDP 기준)를 가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FDI 유입은 현재 GDP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 체결 증가 등으로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FDI 흐름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FDI에 관한 현황분석, 이론분석, OECD STRI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증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본 보고서의 목적,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진행 방향 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FDI와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을 제시한 후 한국의 FDI 현황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FDI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이 FDI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제4장에서는 OECD STRI를 한국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새롭게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연도별로 FTA를 이용해 새롭게 도출된 STRI를 이용해 한국으로의 FDI 유입 결정요인으로서 서비스 규제완화의 서비

스 및 제조업 FDI 유입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국의 FDI 유입 현황, 이론적 모형, STRI로 본 한국의 규제 변화,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한 FDI 유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 1-2.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연구 내용	FDI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FDI		현실에서의 FDI
구성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분석 대상	한국의 FDI 유입 현황	이론모형	FTA를 반영한 STRI 재산출	실증 분석
주요 내용	최근 한국의 서비스 및 제조업 FDI 유입 현황	FDI 결정에 관한 최신 이론 소개 및 모형분석	한-미 FTA, 한-EU FTA 등 한국이 맺은 주요 FTA를 STRI에 반영	서비스 규제 개선으로 인한 서비스 및 제조업 FDI 유입 분석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세계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

지난 약 20년간 국제무역 분야는 학문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실증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업 수준의 분석 연구가 이론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운송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세계화 및 개방화를 가속시켰으며 국제무역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러한 개방화는 각국 산업의 특성을 기초로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개별 기업의 생산성의 차이는 개별 기업의 수출 규모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무역과 관련된 FDI 및 기업 활동의 변화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Markusen(2002)과 Antràs and Yeaple(2013)이 정형화된 사실로 정리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 이들에 논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Markusen(2002)은 FDI의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국가 수준에서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국가 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국가 수준 FDI의 특징
•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선진국들이 해외투자의 유출뿐만 아니라 유입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선진국간에는 양방향 FDI가 일반적이다. • 대부분의 FDI는 수평적 성격이다. • 전 세계 교역의 약 30% 정도가 기업 내 교역(intra-firm trade)이다. • FDI는 국가간 자본량 차이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 • 정치적 위험이나 불안정성이 FDI 유입에 가장 중요한 저해 요인이며 세금 등은 부수적인 요인이다.

자료: Markusen(2002), Chapter 1, 재인용: 김종덕 외(2013), p. 34.

Antràs and Yeaple(2013)은 FDI의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을 기업 수준에서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기업 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기업 수준 FDI의 특징
• 다국적 활동은 주로 선진국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개발도상국은 투자의 근원지이기보다는 대부분 목적지이다. • 경제활동에서 다국적 기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자본집약적이고 R&D집약적인 상품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양방향 FDI 흐름의 상당 부분은 성격상 동일 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 • 다국적 기업의 해외 관계사를 통한 생산은 거리에 따라 감소하지만 총수출이나 모기업 관계사로의 투입을 위한 수출에 비해 감소율이 낮다. • 다국적 기업은 모기업과 관계사 모두 다국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으며 R&D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이다. • 다국적 기업에서 모기업은 상대적으로 R&D에 특화되며, 관계사는 진출해 있는 해외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주로 관여한다. • 국경 간 인수합병은 FDI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선진국에서 중요한 시장 진입의 방식이다.

자료: Antràs and Yeaple(2013), Chapter 2.

Markusen(2002)과 Antràs and Yeaple(2013)은 서로 다른 수준의 데이터를 다른 기간 동안에 살펴보고 있으므로 세밀한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두 연구가 제시하는 FDI 관련 특징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Antràs and Yeaple(2013)을 중심으로 두 저서에서 나타난 FDI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선진국 간에 양방향 FDI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국경 간 무역장벽을 넘어 상대국 시장에 직접 진입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투자 유치국으로서 시장 진입 목적이라기보다는 생산 공정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FDI의 특징은 Markusen(2002)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둘째, FDI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간에 다국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 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 R&D 및 자본 집약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첫 두 가지 특징은 실증 분석

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FDI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변수로 국가 간 소득 수준의 유사성이나 크기의 유사성이 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것을 의미한다.[2] 셋째, 다른 상황이 모두 일정할 때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FDI가 줄어들게 된다. 거리와 FDI 양(amount)의 반비례 관계는 무역에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교역량이 감소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거리에 따른 FDI 양의 감소 속도가 무역에 비해 현저하지 않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으며 R&D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이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특징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 다섯째, 다국적 기업은 모기업과 관계사의 역할 분담이 꽤 명확한 편이며 주로 모기업은 R&D 관련 업무에, 해외 소재 관계사는 주로 현지 생산 및 판매 관련 업무에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업에 속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교역(intra-firm trade)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 간 업무 분업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주(outsourcing or offshoring) 등을 통한 독립법인과의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인수합병(M&A: Merges and Acquisitions)은 FDI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러하다. 이 외에 Markusen(2002)에서 국가적 수준의 FDI 흐름으로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 장 모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 간 자본량 차이에 따른 해외투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한계 투자 수익률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해외직접투자에 의미있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에서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자 환경의 안정성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 국가의 정치 안정성이나 거시 경제적 건전성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실증 분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5장에서 이루어진다.

2.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 정형화된 사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FDI 흐름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에 이어 본 절에서는 한국의 FDI 유입 현황을 살펴보고 본 절에서 언급한 세계적인 FDI 흐름의 특징이 한국의 경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데이터의 한계로 2.1.절에서 언급한 모든 특징을 본 것은 아니며 주요한 특징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 함께 외환위기 동안 외국 자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9년 신고금액[3] 기준으로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면서 동시에 한국의 투자 유입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다시 반등하기도 했다. 2010년대 이르러서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는 총 신고금액이 2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표 2-3. 지역·국가별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주 지역	688	6,042	3,108	2,681	3,749	4,411	4,552	5,017	8,446
미국	665	2,921	2,690	1,975	2,372	3,674	3,525	3,609	5,479
캐나다	2	520	193	480	739	394	388	572	1,268
아주 지역	798	4,718	3,514	6,900	4,398	8,848	5,008	6,788	8,357
일본	425	2,452	1,881	2,084	2,289	4,542	2,690	2,488	1,665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기준 및 도착기준 수치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수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계하는 신고금액의 경우 사전에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에 따른다. 반면 도착금액은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 유입되는 투자액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제수지표상 외국인직접투자는 앞의 것과는 범위와 대상이 다소 상이한데 여기에는 장기건설투자, 개인부동산투자, 지점투자, 5년 미만의 차관 등도 포함된다.

표 2-3.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싱가포르	65	297	389	773	611	1,405	431	1,673	2,521
홍콩	58	123	820	93	572	1,670	976	1,061	1,515
중국	11	76	68	414	651	727	481	1,189	1,978
구주지역	461	4,446	4,781	3,196	5,192	2,714	4,802	6,504	2,495
네덜란드	169	1,774	1,141	1,185	1,011	635	618	2,380	476
영국	87	86	2,316	649	919	361	116	432	259
독일	45	1,627	705	268	1471	408	360	230	536
중동 지역	2	3	37	171	92	52	78	225	1,382
아프리카 지역	0	6	32	30	41	15	24	283	26
합계	1,949	15,215	11,472	12,978	13,472	16,040	14,464	18,817	20,70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6. 8. 24).

국가별 FDI 유입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으로의 FDI 유입은 한국이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투자국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의 유입은 작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이 가장 크고 두 국가 외에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만 특정 국가로부터의 연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량(flow) 특성상 연도별로 편차가 크다.[4)]

4) 본 연구에 이용된 FDI 유입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집계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는 수치는 아니며 따라서 해당 연도의 투자 유입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는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통계와 도착금액 통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지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고금액 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도착금액의 비중은 연도별로 편차는 크지만 평균적으로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2010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신고금액의 약 42%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78%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9억 달러의 신고금액 중

산업별 유입에서도 자본집중도가 높은 산업의 FDI 유입 비중이 높다는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에서 보여주는 5년 단위의 기간별 외국인투자 유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FDI 유입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2000년 이후 한국의 FDI 유입에서 서비스 분야가 제조업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인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법률·회계 등)는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분야로 이들 분야에서의 FDI 유입 증가는 단순히 해당 서비스 분야의 FDI 유입을 넘어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분야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16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신고금액과 마찬가지로 도착금액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이다.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중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6.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된다. 주지한 바와 같이 화학공업,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 등은 과거에 비해 유입액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식품, 제지·목재의 경우 1990년대에 이미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선 후 유입액이 더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각각 1%와 0% 수준에 불과하다.

표 2-4. 한국의 기간별 및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1996~2000		2001~05		2006~10		2011~15		총합	
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9,845	100	51,216	100	58,032	100	84,421	100	243,515	100
농·축·수산·광업	327	0.7	32	0.1	26	0.0	88	0.1	474	0.2
농·축·임업	14	0.0	12	0.0	5	0.0	12	0.0	43	0.0
어업	46	0.1	13	0.0	1	0.0	55	0.1	115	0.0
광업	267	0.5	7	0.0	19	0.0	22	0.0	316	0.1
제조업	25,264	50.7	16,243	31.7	20,337	35.0	28,616	33.9	90,461	37.1
식품	2,357	4.7	1,160	2.3	370	0.6	910	1.1	4,797	2.0
섬유·직물·의류	266	0.5	307	0.6	450	0.8	776	0.9	1,799	0.7
제지·목재	2,119	4.3	262	0.5	66	0.1	35	0.0	2,482	1.0
화공	3,829	7.7	3,001	5.9	2,977	5.1	8,879	10.5	18,685	7.7
의약	309	0.6	255	0.5	844	1.5	863	1.0	2,271	0.9
비금속광물	1,269	2.5	840	1.6	917	1.6	3,741	4.4	6,767	2.8
금속	1,174	2.4	855	1.7	1,230	2.1	1,548	1.8	4,807	2.0
기계·장비	2,913	5.8	1,007	2.0	1,470	2.5	2,672	3.2	8,062	3.3
전기·전자	8,544	17.1	5,710	11.1	7,181	12.4	5,361	6.4	26,796	11.0
운송용기계	2,239	4.5	2,467	4.8	4,518	7.8	3,267	3.9	12,491	5.1
기타제조	245	0.5	378	0.7	315	0.5	564	0.7	1,502	0.6
서비스업	23,089	46.3	30,935	60.4	36,525	62.9	52,638	62.4	143,186	58.8
도·소매(유통)	8,959	18.0	4,962	9.7	6,435	11.1	5,803	6.9	26,160	10.7
음식·숙박	2,045	4.1	1,822	3.6	1,808	3.1	3,369	4.0	9,044	3.7
운수·창고(물류)	685	1.4	1,291	2.5	2,297	4.0	1,462	1.7	5,735	2.4
통신	584	1.2	1,414	2.8	134	0.2	91	0.1	2,224	0.9
금융·보험	5,607	11.2	11,583	22.6	12,134	20.9	14,712	17.4	44,035	18.1
부동산·임대	1,289	2.6	2,682	5.2	6,098	10.5	11,284	13.4	21,352	8.8
비즈니스서비스	1,608	3.2	2,285	4.5	5,872	10.1	13,086	15.5	22,851	9.4
문화·오락	1,867	3.7	4,650	9.1	989	1.7	2,071	2.5	9,577	3.9
공공·기타서비스	447	0.9	246	0.5	758	1.3	758	0.9	2,209	0.9

표 2-4.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1996~2000		2001~05		2006~10		2011~15		총합	
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기·가스·수도·건설	1,165	2.3	4,007	7.8	1,144	2.0	3,078	3.6	9,394	3.9
전기·가스	897	1.8	2,130	4.2	529	0.9	1,038	1.2	4,594	1.9
수도	0	0.0	66	0.1	0	0.0	8	0.0	74	0.0
종합건설	201	0.4	1,803	3.5	546	0.9	2,008	2.4	4,557	1.9
전문직별건설	67	0.1	8	0.0	69	0.1	25	0.0	169	0.1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서비스업은 전기·가스·수도·건설 분야를 포함하나 본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분리함.
2) 총합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총합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6.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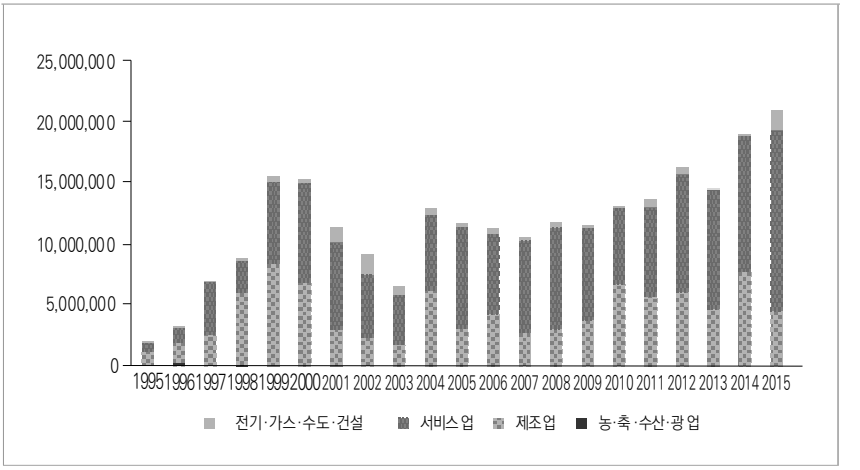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6.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FDI 흐름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FDI 흐름의 정형화된 사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FDI 유입 형태일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FDI 흐름의 주요 형태가 M&A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별로는 M&A 형태의 투자보다는 신규투자(greenfield) 형태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 참고). 연도별 M&A 투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전후로 크게 감소하는 등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M&A와 신규투자 두 투자 형태의 증가와 감소는 대체로 서로 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로는 신규투자 투자는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초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M&A 형태의 경우 한국의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에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2015년 M&A 형태의 투자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체로 두 형태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trend)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투자 형태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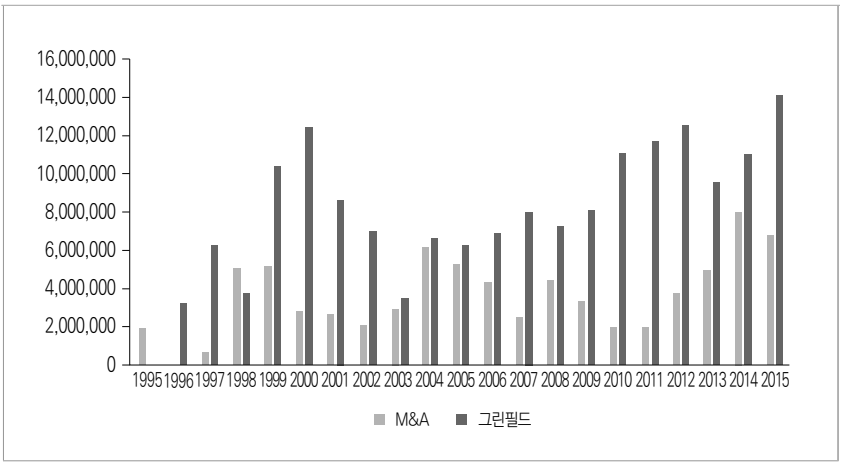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6.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요인: 이론적 측면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당히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경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 거시 경제하에서 국제적 자금 흐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시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 목적과 방식 등에 따라 무역에 대해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 등의 연관관계를 가진다. 산업조직의 관점에서 진입하는 해외시장의 경쟁구조 역시 중요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경쟁은 국가 간의 문화적 동질성, 사용 언어, 법체계의 유사성, 과거의 식민지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196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확장과 함께 발달하였는데 3.1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결정요인 중 거시 경제적 측면의 요인을 살펴본다. 3.2절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벗어나 산업조직 측면 요인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3.3절에서 무역 측면의 요인을 살펴보고 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1. 거시 경제적 FDI 유입 요인

외국인직접투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를 전후로 미국의 유럽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DI의 거시 경제적 결정요인에 대한 초창기 모형들이 탄생하였다. Kindleberger(1969)에 따르면 당시 직접투자라는 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었다. 실제로 1950년대 이전에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일부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직접투자 등 국가 간 자본이동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투자수익율(예: 이자율)의 차이로 분석되었다. 환율 변동성이나 그 밖의 불확실성이 없을 때 자본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주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직접투자는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그림 3-1. 해외투자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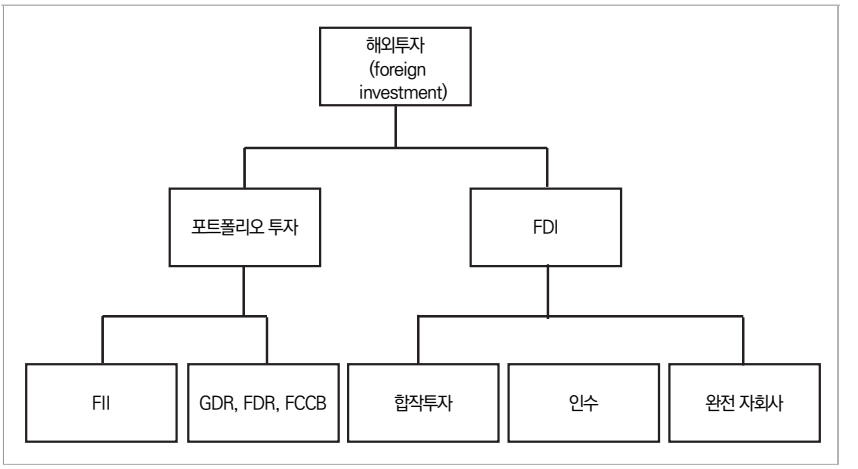

이자율 평형설 등에 기반을 둔 거시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떠나 새로운 접근방법을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초기 이론들로는 MacDougall(1958), Simpson(1962), Kemp(1964), Frankel(1965), Pearce-Rowan(1966), Caves (1971) 등이 있다. 이들 이론의 공통적인 특징은 완전 경쟁을 가정하고 자본은 그 한계 생산성 차이에 따라 이동하며 국가 간의 한계 생산성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이자율 차이에 따른 자본의 이동과 차이가 없으며,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는 경우 국가간 자본의 양이 균등해지면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동은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자본의 이동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자본의 양이 많은 선진국 간에 FDI 유출입이 더 빈번하고 많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에 대

한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다.

2. 산업조직론 측면의 FDI 유입 요인

Hymer(1976)는 기존의 거시경제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FDI를 산업조직(industrial organization)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불완전 경쟁에서 국제적인 생산(international production)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법률, 소비자 선호 등에서의 비교우위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다른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한 경쟁력으로 우월한 기술력, 브랜드, 마케팅과 경영 능력, 규모의 경제, 낮은 금융비용 등을 꼽았다. 한 기업은 이러한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지역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경쟁력 유지는 완전경쟁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독점적 경쟁이나 과점 등 불완전 경쟁의 맥락에서 가능하다는 측면을 부각하였다. 물론 기업이 가진 특정 경쟁력만으로 FDI를 추진할 수는 없다.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함에 있어서 FDI와 수출 간에 고민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국내 시장의 조건이나 크기 등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규제나 정책 등 제도적인 요인 등도 포함된다.

Hymer의 주장은 Dunning(1977, 1981)에 의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소개되었다. Dunning은 OLI 구조(OLI framework)라 불리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요인으로 제시된 'O'는 소유권 이점(ownership advantage)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DI가 포트폴리오 투자와 차이가 나는 점은 통제권 소유 여부이다.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상품 혹은 그 상품의 제조 공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요인으로 제시된 'L'은 위치상 이점(location advantage)이다. 기업

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비해 규모의 경제(scale economy)로 인한 장점을 누리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이상의 장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게 된다. 셋째 요인으로 제시된 'I'는 내부화 이점(internalization advantage)이다. 기업 내부의 기술적 비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현지의 독립적인 기업에 상품을 팔거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소유권 이점을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이다.

3.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FDI) 요인: 국제무역 측면의 이론적 요인 검토

무역과 해외투자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적 제시와 함께 실증적 분석을 제시한 대표적 논문으로 Brainard(1993, 1997)의 연구가 있다. 저자는 연구에서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 '근접성-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근접성-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concentration trade off)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이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현지시장으로의 근접성(proximity)이 높아지고 교역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동일한 제품에 대한 동일한 생산 공정을 해외에 둠으로써 고정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반면, 수출을 할 경우 생산 공정을 한 곳에만 집중함(concentration)으로써 비용상 이득이 있으나 교역 비용이 발생하며 해외 현지 시장 특성 파악이나 시장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서 해외투자와 수출을 통한 공급의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를 일컫는다. 저자는 이론적 모형 제시와 함께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의 대체관계를 실증적으로 보

였다. 본 절에서는 확장된 Krugman(1980)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 최근 논문인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 모형을 중심으로 '근접성-집중도 가설(proximity-concentration hypothesis)'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FDI 흐름에 영향을 주는지 논의해 본다.

가. 기본모형

세계는 H와 F의 두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국가 모두 J+1개 산업에서 상품을 생산하며 그중의 한 상품인 z는 동질적인 상품이다. 나머지 J개의 산업은 수없이 많은 차별화된 상품(continuum of differentiated products)을 생산한다. 소비자의 선호는 양국에서 모두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U = \beta_z \log_z + \sum_{i=1}^{J} \beta_j \log Q_j,$$

단, $\beta_z + \sum_{i=1}^{J} \beta_j = 1,$

그리고 $$Q_j = \left(\int_{\omega \epsilon \Omega j} qj(\omega)^{(\sigma-1)/\sigma} dw \right)^{\sigma/(\sigma-1)}, \quad \sigma > 1. \qquad \text{(식 3-1)}$$

위의 (식 3-1)을 예산제약식에 대하여 최적화하면 i국의 j산업 개별 제품 ω에 대한 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q_j^i(\omega) = \frac{\beta_j E^i}{\int_{\omega \epsilon \Omega_j^i} p_j^i(\omega)^{1-\sigma} dw} p_j^i(\omega)^{-\sigma} = A_j^i p_j^i(\omega)^{-\sigma}, \quad i = H, F. \text{(식3-2)}$$

각국에서 동질적 상품 z는 규모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기술을 이용하며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투입하고, 선형 단위비용함수

$c_z^i = c_z^i(w^i, r^i)$ $(i = H,\ F)$로 나타낼 수 있다. 동질적인 상품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국가 간에 비용 없이 교역이 가능하며 기준재(numeraire)라고 가정($c_z^i(w^i, r^i) = 1$ $(i = H,\ F)$)한다.

차별화된 제품은 규모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기술이 사용되며 새로운 차별화된 제품 생산에는 고정비용이 소요되고 선형 한계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종합하면 i국 j산업에서 차별화된 상품 q_j^i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C_j^i(w^i, r^i, q_j^i) = \left(f_j + \frac{q_j^i}{\psi}\right) c^{i_j}(\omega^i, r^i). \qquad \text{(식 3-1)}$$

고정비용 파라미터인 f_j는 규모의 경제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같은 j상품 내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한계비용과 관련하여 ψ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Krugman(1980)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지만 Melitz(2003)에서는 동일한 산업에서도 기업별로 다르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성 누적 분포를 $G(\psi)$로 표시하기로 한다. 차별화된 상품의 무역은 종가세(ad valorem) 개념의 무역비용이 발생하며 τ_j로 표기한다. 수출하는 기업은 f_X만큼의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나. FDI의 근접성-집중도 가설(proximity-concentration hypothesis)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FDI의 이론적 결정요인을 점검하기로 한다. 논의를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분야($J = 1$)와 하나의 생산요소(노동, L)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한계비용(여기서는 임금)은 1로 고정하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C(q) = f + \frac{q}{\psi}$$

고정비용 f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f_E는 기업 수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t the firm level)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서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f_E는 R&D 비용, 브랜드 개발, 법률상담, 회계, 금융조달 등의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회사의 차별화된 제품을 창출해 내기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f_D는 제품의 생산이나 조립에 필요하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생산량 변동에 연동되어 있지 않은 간접비용(overhead costs)이다. f_E와 달리 f_D는 공장수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t the plant level)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장 운영에 소요되는 서비스 관련 고정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운송비용 $\tau > 1$을 피하기 위하여 FDI를 수행하려고 할 수 있다. 좀 더 엄밀한 균형의 분석을 위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기업이 FDI를 결정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기업이 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로 수출할 경우 해당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pi_X^i = \psi^{\sigma-1}B^i + \psi^{\sigma-1}\tau^{1-\sigma}B^{-i} - f_E - f_D, \qquad \text{(식 3-4)}$$

여기에서

$$B^i = \frac{1}{\sigma}\left(\frac{\sigma-1}{\sigma}\right)^{\sigma-1}A^i. \qquad \text{(식 3-5)}$$

수출기업의 수익구조는 국내수요에 따른 수익, 운송비를 고려한 해외수요에 따른 수익에서 시장진입 고정비용과 고정 간접경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시장진입 자유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pi_X^H = \pi_X^F = 0$ 이다. (식 3-4)를 정리하면 결국 기업의 총수입이 총비용과 같아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B^H = B^F = B_X = \frac{f_E + f_D}{\psi^{\sigma-1}(1+\tau^{1-\sigma})}, \qquad \text{(식 3-6)}$$

기업이 위에 제시된 균형에서 벗어나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익구조를 가지게 된다.

$$\pi_I = \psi^{\sigma-1}B^H + \psi^{\sigma-1}B^F - f_E - 2f_D \qquad \text{(식 3-7)}$$

수출의 경우와 수익구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해외수요에 따른 수익 계산에서는 운송비용이 고려되지 않는 반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간접비용(overhead costs)인 f_D가 두 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수익구조일 경우 FDI는 발생하지 않는다.

$$\frac{2f_D}{f_E} > (\tau^{\sigma-1} - 1) \quad \textbf{또는} \quad \frac{2f_D}{f_E} - (\tau^{\sigma-1} - 1) > 0 \qquad \text{(식 3- 8)}$$

다시 말해 간접비용이 브랜드 설립을 위해 들어간 비용에 비해 높을 경우,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그리고 대체 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σ)이 작을 경우 기업은 FDI보다는 수출을 선호하게 된다.

다.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FDI 유입

여기에서는 잠시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이 FDI 유입에 궁극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잠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운송비용 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하고 τ의 변화는 본 절 후반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현재 기업의 본부는 H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차별화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은 H국에서 f_E^H만큼 지불한다. 또한 공장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H국과 F국의 간접비용을 각각 f_D^H와 f_D^F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 3-8)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세분화하여 쓸 수 있다.

$$\frac{f_D^H + f_D^F}{f_E^H} - (\tau^{\sigma-1} - 1) > 0 \qquad \text{(식 3-9)}$$

기업이 같은 수준의 기술을 자국(origin country)과 투자유치국(destination country)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외 진출로 인한 가변 생산 비용(variable production costs)은 양국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현지 진출 등으로 인한 법률·회계·금융·통신 등의 분야에서 현지 사업 수행을 위해 들게 되는 간접비용(overhead costs)은 자국에서와 같지 않다($f_D^H \neq f_D^F$)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업이 자국에서의 고정비용이 변하지 않으며(다시 말해 기업의 브랜드 창출 비용인 f_D^H와 자국에서의 공장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인 f_D^H가 고정) 운송비용을 포함한 교역비용 τ가 변하지 않는다면 투자유치국의 간접비용 f_D^F의 하락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에서 수출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 경우 해외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국내 시장에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지 해외시장에 수출할지, 아니면 현지 진출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최근 연구 중 하나는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이다. 이들의 모형을 현재 본 장에서 제시된 모형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Helpman, Melitz and Yeaple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

고 그에 따른 수익구조를 분석하였다. 세 가지 기업의 유형은 기업의 해외 진출 형태에 따라 구분하며 국내기업, 수출기업, 해외 진출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형태에 따른 기업의 수익구조는 아래의 식과 같이 각각 쓸 수 있다.

$$\pi_D(\psi) = B\psi^{\sigma-1} - f_D^H \qquad \text{(식 3-12)}$$

$$\pi_X(\psi) = B\psi^{\sigma-1}\tau^{1-\sigma} - f_X \qquad \text{(식 3-13)}$$

$$\pi_I(\psi) = B\psi^{\sigma-1} - f_X - f_D^F \qquad \text{(식 3-14)}$$

국내기업은 국내수요(B)와 기업 자신의 생산성(ψ)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f_D^H)을 감당하는 수준에서 활동하게 된다. 수출기업의 경우 해외의 수요에 교역비용과 수출을 위해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생산설비 고정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3-2. 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의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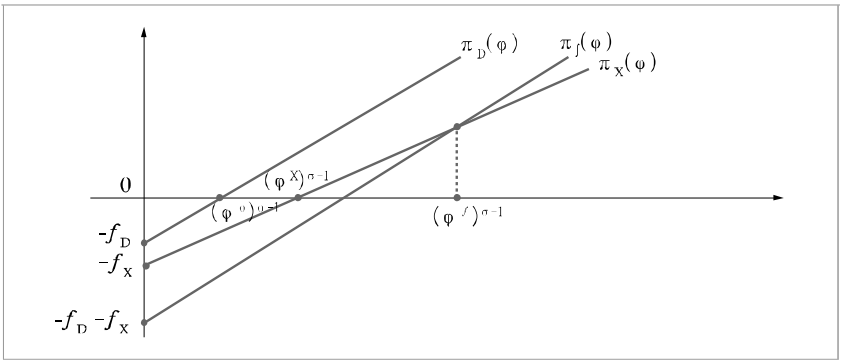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종축(horizontal axis)은 생산성을 표시하며 우측으로 갈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횡축(vertical axis)은 기업의 비용과 수익을 표시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추가적인 고정비용은 $-(f_X + f_D^F)$으로 표시할 수 있다. 투자유치국(destination country) 규제개선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 등의 감소는 f_D^F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프에서는 $\pi_I(\psi)$가 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해당 산업에서 좀 더 많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교역비용의 감소는 동일한 고정비용에서 $\pi_X(\psi)$가 좀 더 가파르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산업에서 기업이 해외 진출보다는 수출을 선호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 국가가 FTA 등을 추진할 경우 f_D^F 뿐만 아니라 가변 교역비용 τ도 낮아지게 된다. 상품의 경우 교역비용의 하락은 관세 감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TA의 체결이 제조업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결국 FTA 등의 통상협정 체결이 될 경우 전반적으로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서비스업과 제조업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은 제5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4장

기체결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분석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제3장에서 우리는 표준적인 이론모형을 통해 투자유치국(destination country)의 간접비용 f_D^F의 하락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에서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시 간접 고정비용이 감소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고정비용 감소요인 중에서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간접 고정비용의 감소 요인이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회계·통신·금융·유통처럼 기업의 운용 전반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위당 생산 및 판매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τ를 낮추기보다는 간접비용 성격과 관련이 많은 f_D^F를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는 국가 간 비교나 수준 분석이 어렵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서비스 분야의 규제 수준 분석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이용하였다.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2014년 OECD 회원국과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18개 분야에 대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조금씩 분야와 회원국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최혜국(most-favoured nation) 대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EU 등 서비스 강국과 높은 수준의 협정을 맺었고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OECD에서 분야를 확장하여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19개 분야 중 한국이 체결한 FTA를 반영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새로 도출하였다.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주요 서비스 분야 개방 수준의 국가별 비교는 본 장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점검한 기체결 FTA는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EFTA, 한-뉴질랜드 FTA 등 6개이다. FTA 선정 기준은 최근 체결한 FTA로 WTO 플러스(plus) 요인을 포함한 협정으로 하였다.[5] 서비스 분야별로는 법률,

5)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도 한국이 체결한 최근의 FTA 중 하나이나 5장의 분석 범위가 2015년

회계 등의 사업 서비스, 통신 서비스, 금융 서비스, 로지스틱 서비스(수화물 처리, 통관, 화물 이송, 저장 및 보관) 등 총 8개 분야를 분석하였다. 8개 분야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개방이 이루어지는 해당 분야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보다는 기업의 간접 고정비용 f_D^F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선정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측면에서 본 연구는 FTA 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법령의 변화를 실질적인 변화 시점으로 인식하고 분석에 반영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FTA 발효 시점을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시점과 동일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국내 법령이 실제로 입안된 후 실행연도를 변화의 시점으로 인식하고 분석에 반영하였다.

1. FTA별 서비스 분야 개방도 변화

가. 한-미 FTA(2012. 3. 15. 발효)

한-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높은 수준의 협정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된 8개 분야 중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의 변동을 초래하는 수준의 협정 변화가 있는 분야는 법률·회계·통신 세 개 분야이다. 나머지 금융 및 로지스틱 분야에서는 STRI상 한-미 FTA를 통해 기존의 개방 수준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들 세 분야에서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도상의 변화를 상세히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도출하였다.

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한중 FTA의 경우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상품 협상 발표 후 2년 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2015년 말까지 의미 있는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1) 법률 서비스

한-미 FTA에서 한국의 법률 서비스 분야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I 유보' 사항이다. 다시 말해 자유화 후퇴 방지(ratchet) 의무 적용 면제 사항으로 협정 이후 국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한사항 추가가 가능하다.

한-미 FTA를 통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1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 이전에 미국의 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후에(2014년 이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2017년 이후) 외국 법률사무소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미 FTA 법률시장 1단계 개방과 관련하여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09년 한국은 미국의 공인된 법률 전문가가 국내에서 별도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법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제도를 창설하였다(2009. 9. 26. 제정). 한-미 FTA 발효 후 2년 기한인 2014년 3월 15일 이전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2단계 개방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 관련 법령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를 2011년 4월 5일 신설하고 같은 달 30일에 시행하였다. 한-미 FTA 발효 후 5년 기한인 2017년 3월 15일 이전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3단계 개방과 관련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및 12를 2016년 3월 2일 신설하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하였다.

• 관련법: 「외국법자문사법」(2009. 9. 26. 제정)
• 분야: 법률서비스 – 외국법 자문사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합중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 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한-미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의 법률시장 개방은 협정 발효일 이전,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2014년 이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2017년 이내) 3단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기준으로 0.49에서 0.461로 변화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법률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475이나 이는 이미 2.8.1항인 '외국법 사무 수행을 위한 외국 공급자의 국내 학위, 실무, 시험 이행 요구(Foreign providers have to completely re-do the university degree, practice and exam in the domestic country(international law))'에 FTA 체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항목을 수정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재산출한 값인 0.49를 초기 값으로 산정하였다. 이후의 장에서 수행되는 계량 분석을 위한 변화의 시점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으로 하였다.

세부 개방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법률시장 개방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정 항목 중 2.8.1항과 2.5.1항에 반영되었다. 2.8.1항인 '외국법사무 수행을 위한 외국 공급자의 국내 학위, 실무, 시험 이행 요구(Foreign providers have to completely re-do the university degree, practice and exam in the domestic country(international law))'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약 0.014 감소하였다. 2.5.1항인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위한 사전적 또는 영구적 거주 요건(Prior or permanent residency required for license to practice(international law))'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약 0.014 감소하였다.[6] 법률시장 2단계 개방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법률 서비스 항목 중 1.2.535항에 반영되었다. 1.2.535항인 '국내외 변호사간 상업적 제휴의 금지(Commercial association is prohibited between locally and not locally licensed practitioners)'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다. 다만 본 항목은 2.8.1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법률 서비스 항목 중 1.2.635항에 반영되었다. 1.2.635 항목인 '국내 변호사 고용 금지(Prohibitions on hiring locally-licensed lawyers)'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다. 다만 2단계 개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항목은 2.8.1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한국 법률사무소 등과 합작법무법인 형태가 아닌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내 변호사의 고용이 금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제1항)된다는 측면에서 개방의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실제 수치상의 변화 계산에서 가중치 등을 반영한 후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2) 회계

회계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와 같이 사업 서비스에서 전문직 서비스의 하나로 분류되며 회계 서비스 분야의 개방 약속은 법률 서비스 분야와 유사하다. 한-미 FTA에서 한국의 회계 서비스 분야의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I 유보' 사항이다. 다시 말해 자유화 후퇴 방지(ratchet) 의무 적용 면제 사항으로 협정 이후 국내 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한사항 추가가 가능하다.

한-미 FTA를 통한 한국의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개방에서는 협정 발효일 이전까지 미국 회계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 회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동시에 미국 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 개방에서는 발효 후 5년 이내인 2017년까지 미국 회계법인이 한국 회계법인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된 국내 법령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발효일 이전인 1단계 개방에 대하여 2011년 6월 30일「공인회계사법」제40조의9와「공인회계사법」제40조의3을 신설하였다. 신설 법령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는 외국 회계법인 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 한정된 업무(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이전에는「공인회계사법」제3조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와 제2조에서 규정된 공인회계사의 직무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이후 공인회계사의 업무 중 일부(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가 개방

되어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단계 개방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6월 30일「공인회계사법」제40조의12를 신설하여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회계법인 출자를 허용하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한-미 FTA 2단계 개방에 따라 발효 5년 이내에 외국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회계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할 수 있고 1인당 외국 공인회계사의 지분은 10% 미만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관련법:「공인회계사법」(시행 2016. 7. 2./ 개정 2011. 6. 30.)
-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 (제12.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미합중국 내에 등록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또는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미합중국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내에 등록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미만까지 보유한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회계법인이라 함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한-미 FTA로 인한 회계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의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협정 발효일 이전,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2017년 이내) 2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는 2단계 개방에서만 나타났다.

세부 단계별 개방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목은 2.6.2항이다. 2.6.2항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여기에서는 회계사)의 국내 시험 합격 필요 여부(Foreign professionals are required to take a local examination(accounting))'에 대한 질문으로 한-미 FTA를 통해 개방한 일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자격시험 합격 조건이 불필요하지만 국내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내 절차에 따른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에서 2.6.2에 대한 대답이 여전히 '네(yes)'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1단계 개방에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다른 조치 항목들은 2.4.1항(자격 획득을 위한 국적 요건), 2.5.1항(자격 획득을 위한 영주권 요건), 2.5.346항(자격 획득을 위한 국내 거주 요건), 2.25.1항(자격 인증 요건) 등을 들 수 있으나 한-미 FTA를 통해 추가적으로 변경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단계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목은 외국인의 최대 지분 제한(Maximum foreign equity share allowed(%)(accounting))

을 정한 1.1.1항이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한 2단계 개방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 제한이 50% 미만까지만 허용되었음에도 1.1.1항의 대한 대답이 '지분 제한 없음(Exactly 100%)'으로 되어 있어 현재 한국의 회계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현행 국내 법령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확한 수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1.1항에 한-미 FTA 이전 상황을 반영하여 주식 또는 지분 제한이 100%인 경우의 수치(0.33)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FTA 이후 50% 미만까지 허용된 내용을 재적용하여 한-미 FTA에 따른 회계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회계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3에서 0.294로 변화하였다.

3) 통신

한-미 FTA에서 통신서비스의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 유보' 사항이다. 따라서 자유화 후퇴 방지(ratchet) 의무가 적용되고 진전된 자유화 수준은 법령 등의 개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

통신 서비스 분야 개방은 지분 제한 완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인 2014년까지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이 완전히 완화되어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한 100% 소유가 가능해진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15% 이상인 의제외국인에 대한 지분 제한이 철폐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관련된 국내 제도 및 법령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한-미 FTA 통신시장 개방 약속에 따라 2013년 8월 13일「전기통신 사업법」제8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7]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7)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1호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③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④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 상대국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며 2014년 2월 14일 시행되었다.

- 분야: 통신 서비스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19조 및 제59조의2(법률 제8324호, 2007. 3. 29),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7815호, 2005. 12. 30)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

한-미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미 FTA의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259에서 0.23으로 하락하였다.

세부 개방 내역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개방 내역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1.1.1항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1항은 외국인의 최대 지분(Maximum foreign equity share allowed(%))으로 한-미 FTA 개방에 따라 49% 외국인 지분 제한이 100%로 완화됨에 따라 통신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59에서 0.23으로 하락하였다.

이 외의 분야(금융 서비스, 로지스틱 서비스(수화물 처리, 통관, 화물 이송, 저장 및 보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분석 대상 분야의 STRI 변화는 [표 4-1]과 같다.

표 4-1. 한-미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연도	법률	통신	회계	은행	화물관리	통관중계	화물 이송	보관 및 저장
2010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1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2	0.461	0.259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2013	0.461	0.259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2014	0.461	0.23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2015	0.461	0.23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한-유럽연합(EU) FTA(2011. 7. 11. 잠정 발효, 2015. 2. 13. 전체 발효)

한-EU FTA는 한-미 FTA와 함께 한국이 체결한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EU FTA와 한-미 FT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비스 협정에서 전자의 경우 열거주의 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을 채택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의 자유화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열거주의 방식에서도 포괄주의 방식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가능하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EU FTA와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은 같다고 할 수 있다.

1) 법률

한-EU FTA에서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내용은 한-EU FTA의 부속서 7-가-4 구체적 약속에 대한 양허표에 기술되어 있다. 열거주의 방식의 개방이므로 양허의 경우 W120 서비스 분류를 이용하여 약속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는 모드 1(국경간 거래), 2(해외소비), 3(현지주재)에 대해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

한-EU FTA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별 이행 사항도 동일하다. 다만 한-EU FTA가 1년 먼저 체결되었으므로 단계별 개방이 1년씩 먼저 이행되었다. 1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 이전에 EU 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후에(2013년 이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2016년 이후) 외국 법률사무소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EU FTA 법률시장 1단계 개방과 관련하여 한-EU FTA 발효 이전인 2009년 한국은 외국의 공인된 법률 전문가가 국내에서 별도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법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제도를 창설하였다(2009. 9. 26. 제정). 한-EU FTA 발효 후 2년 기한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2단계 개방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 관련 법령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를 2011년 4월 5일 신설하고 같은 달 30일에 시행하였다. 한-EU FTA 발효 후 5년 기

한인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3단계 개방과 관련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 및 12를 2016년 3월 2일 신설하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한 국내 제도의 변화는 한-미 FTA 및 한-EU FTA 모두를 염두하고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CPC 861)
1)2)3)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i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음.

한-EU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FTA의 법률시장 개방은 협정 발효일 이전,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2013년 이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2016년 이내) 3단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기준으로 0.49에서 0.461로 변화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법률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475이나 이는 이미 2.8.1항인 '외국법 사무 수행을 위한 외국 공급자의 국내 학위, 실무, 시험 이행 요구(Foreign providers have to completely re-do the university degree, practice and exam in the domestic country(international law))'에 FTA 체결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해당 항목을 수정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재산출한 값인 0.49를 초기 값으로 산정하였다. 이후의 장에서 수행되는 계량분석을 위한 변화의 시점은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으로 하였다. 한-미 FTA와 비교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의 크기는 동일하나 변화의 시점이 다르다.

세부 개방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로 인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와 한-EU FTA로 인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는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법률시장 개방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산정 항목 중 2.8.1항과 2.5.1항에 반영되었다. 2.8.1항인 '외국법 사무 수행을 위한 외국 공급자의 국내 학위, 실무, 시험 이행 요구(Foreign providers have to completely re-do the university degree, practice and exam in the domestic country(international law))'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약 0.014 감소하였다. 2.5.1항인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위한 사전적 또는 영구적 거주 요건(Prior or permanent residency required for license to practice(international law))'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약 0.014 감소하였다.[8] 법률시장 2단계 개방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법률 서비스 항목 중 1.2.535항에 반영되었다. 1.2.535항인 '국내외 변호사간 상업적 제휴의 금지(Commercial association is prohibited between locally and not locally licensed practitioners)'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다. 다만 본 항목은 2.8.1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법률 서비스 항목 중 1.2.635항에 반영되었다. 1.2.635 항목인 '국내 변호자 고용 금지(Prohibitions on hiring locally-licensed

8)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실제 수치상의 변화 계산에서 가중치 등을 반영한 후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이에 따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lawyers)'에 대한 답변이 '네(yes)'에서 '아니요(no)'로 변경되었다. 다만 2단계 개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항목은 2.8.1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한국 법률사무소 등과의 합작법무법인 형태가 아닌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내 변호사의 고용이 금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제1항)된다는 측면에서 개방의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회계

한국의 회계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은 한-EU FTA의 부속서 7-가-4 구체적 약속에 대한 양허표에 적시되어 있다. 열거주의 방식의 개방이므로 양허의 경우 W120 서비스 분류를 이용하여 약속하였다.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는 모드 1(국경간 거래), 2(해외소비), 3(현지주재)에 대해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를 통한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개방에서는 협정 발효일 이전까지 협정 상대국 회계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 회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동시에 협정 상대국 회계사가 한국 회계 법인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 개방에서는 발효 후 5년 이내인 2016년까지 외국 회계법인이 한국 회계법인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된 국내 법령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발효일 이전인 1단계 개방에 대하여 2011년 6월 30일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9와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을 신설하였다. 신설 법령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는 외국 회계법인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 한정된 업무(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이

전에는「공인회계사법」제3조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와 제2조에서 규정된 공인회계사의 직무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이후 공인회계사의 업무 중 일부(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가 개방되어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단계 개방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 6월 30일「공인회계사법」제40조의 12를 신설하여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회계법인 출자를 허용하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한-EU FTA의 2단계 개방에 따라 발효 5년 이내에 외국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 회계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미만으로 보유할 수 있고 1인당 외국 공인회계사의 지분은 10% 미만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b. 회계, 감사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CPC 862)
1)2)3)
(a)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음.
(b) (a)8)에서 공급이 허용된 회계 및 감사 서비스 외의 회계 및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함.
a)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그들이 등록한 관할 지역

의 회계법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b)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함.

(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a)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 그리고

b)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유럽연합 회원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추가적 약속

1)2)3)

대한민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i) 외국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자문

(ii) 공인회계사연수

(iii)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iv) 정보교환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등록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1년까지 허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한-EU FTA로 인한 회계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FTA의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협정 발효일 이전,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2016년 이내) 2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는 2단계 개방에서만 나타났다.

세부 단계별 개방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목은 2.6.2항이다. 2.6.2항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여기서는 회계사)의 국내 시험 합격 필요 여부(Foreign

professionals are required to take a local examination(accounting))'에 대한 질문으로 한-EU FTA로 개방한 일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자격시험 합격 조건이 불필요하지만 국내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내 절차에 따른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국내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에서 2.6.2에 대한 대답이 여전히 '예(yes)'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1단계 개방에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다른 조치 항목들은 2.4.1항(자격 획득을 위한 국적 요건), 2.5.1항(자격 획득을 위한 영주권 요건), 2.5.346항(자격 획득을 위한 국내거주 요건), 2.25.1항(자격 인증 요건) 등을 들 수 있으나 한-EU FTA를 통해 추가적으로 변경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일 5년 이내로 약속한 2단계 개방에 따라 2011년 6월 30일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회계법인 출자를 허용하되 국내 회계법인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2를 신설하였다. 현재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서는 위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바 한-EU FTA에 따른 회계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기존 값인 0.27로 유지되었다.

한편 2단계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목은 외국인의 최대 지분 제한(Maximum foreign equity share allowed(%)(accounting)) 을 정한 1.1.1항이다. 그러나 한-EU FTA를 통한 2단계 개방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 제한이 50% 미만까지만 허용되었음에도 1.1.1항의 대한 대답이 '지분 제한 없음(Exactly 100%)'으로 되어 있어 현재 한국의 회계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현행 국내 법령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확한 수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1.1항에 한-EU FTA 이전 상황을 반영하여 주식 또는 지분 제한이 100%인 경우의 수치(0.33)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FTA 이후 50% 미만까지 허용된 내용을 재적용하여 한-EU FTA에 따른 회계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EU FTA에 따른 회계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3에서 0.294로 변화하였다.

3) 통신

한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은 한-EU FTA 부속서 7-가-4 구체적 약속에 대한 양허표에 적시되어 있다. 열거주의 방식의 개방이므로 양허의 경우 W120 서비스 분류를 이용하여 약속하였다.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는 모드 1(국경간 거래), 2(해외소비), 3(현지주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분야 개방은 지분 제한 완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인 2014년까지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이 완전히 완화되어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한 100% 소유가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15% 이상인 의제외국인에 대한 지분 제한이 철폐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관련된 국내 제도 및 법령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한-EU FTA 통신시장 개방 약속에 따라 2013년 8월 13일「전기통신 사업법」제8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9]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며 2014년 2월 14일 시행되었다.

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1호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③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④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C. 통신 서비스

2) 제한 없음.

3)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됨.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10] 모두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에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없음.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함.

(a) 외국인의제법인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단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b) 외국인의제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 함.

한-EU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EU FTA의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259에서 0.23으로 하락하였다.

세부 개방 내역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한-EU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개방 내역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1.1.1항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1항은 외국인의 최대 지분(Maximum foreign equity share allowed (%))으로 한-EU FTA 개방에 따라 49% 외국인 지분 제한이 100%로 완화됨에 따라 통신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59에서 0.23으로 하락하였다.

10) '외국인의제법인'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대한민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이 외의 분야(금융 서비스, 로지스틱 서비스(수화물 처리, 통관, 화물 이송, 저장 및 보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분석 대상 분야의 STRI 변화는 [표 4-2]와 같다.

표 4-2. 한-EU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연도	법률	통신	회계	은행	화물 관리	통관 중계	화물 이송	보관 및 저장
2010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1	0.461	0.259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2012	0.461	0.259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2013	0.461	0.259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2014	0.461	0.23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2015	0.461	0.23	0.294	0.139	0.17	0.081	0.155	0.111

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한-호주 FTA(2014. 12. 12. 발효)

한-호주 FTA는 한-미 FTA 와 한-EU FTA 이후 한국이 최근 체결한 높은 수준의 FTA 중 하나이다. 한-호주 FTA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은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 방식이다. 양허상의 특징으로는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호주 FTA에서는 모드 4가 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양허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이동은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해 수평적으로 적용하는 양허인 바, 분야별 양허와 더불어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호주 FTA 서비스 분야의 높은 개방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1) 수평적 양허(모든 분야에 적용)

한-호주 FTA는 부속서 10-가-1에서 기업내전근자(ICT)의 경우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된 조치의 변화는 수평적 변화로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따라서 한-호주 FTA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감소가 나타난다.

한-호주 FTA 수평적 양허로 인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호주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목은 2.3.1항으로 기업 내 전근자 체류기간 제한(Limitation on stay for intra-corporate transferees(months))에 대한 답변이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36개월 초과'로 변동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회계·금융·통신·로지스틱 분야의 동일한 항목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변동되었으며 분야별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서비스의 경우 한-호주 FTA가 반영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15감소하여 0.475가 되었고 회계 서비스의 경우 0.011 감소하여 0.319가 되었으며 통신 서비스의 경우 0.005 감소하여 0.254가 되었다. 한-호주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된 개방의 확대는 금융이나 로지스틱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상업은행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07 감소하여 0.132로 낮아졌다. 로지스틱 서비스 분야는 수화물 처리(cargo-handling)의 경우 0.006 감소하여 0.164로 낮아졌고 통관 중계(custom brokerage)의 경우 0.009 감소하여 0.072로 낮아졌으며 화물 운송(freight forwarding)의 경우 0.007 감소하여 0.148로 낮아졌고 저장 및 보관(storage and warehouse)의 경우 0.007 감소하여 0.104로 낮아졌다.

2) 법률

한-호주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이 포괄주의 방식이다. 또한 법률 서비스의 경우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I 유보' 사항으로 자유화 후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호주 FTA를 통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은 한-미 FTA와 동

일하므로 본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호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협정의 발효 시점 및 개방 일정을 따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분야별 개방과 더불어 수평적 양허로 인한 추가적 개방이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관련법:「외국법자문사법」(2009. 9. 26. 제정)
- 분야: 법률서비스 - 외국법 자문사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호주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호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호주 법무회사(로펌)가 한국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한-호주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호주 FTA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에 체결한 여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일 이전,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 3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이들 시점은 각각 2014년 12월 12일, 2016년 12월 12일,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이다.

한-호주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 변화는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다만 한-호주 FT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한국의 제한 사항이 완화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수준이 한-미 FTA 및

한-EU FTA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제한사항 완화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475로 낮아지게 되었으며 여기에 법률 분야의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추가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446으로 낮아지게 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 단계별 제한 사항의 완화 내용은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3) 회계

회계 서비스의 경우 법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I 유보' 사항이며 따라서 자유화 후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호주 FTA를 통한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은 한-미 FTA와 동일하므로 본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호주에 대한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협정의 발효 시점 및 개방 일정을 따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분야별 개방과 더불어 수평적 양허로 인한 추가적 개방이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분야: 회계 서비스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10조), 현지주재(제7.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호주 내에 등록한 호주 공인회계사 또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호주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호주 내에 등록한 호주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호주에 등록된 호주 공인회계사 1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한-호주 FTA로 인한 회계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호주 FTA의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에 체결한 여타 협정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일 이전,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 2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이들 시점은 각각 2014년 12월 12일,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이다.

한-호주 FTA로 인한 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의 변화는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다만 한-호주 FT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한국의 제한 사항이 완화되면서 회계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수준이 한-미 FTA 및 한-EU FTA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제한 사항 완화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19로 낮아지게 되었고 여기에 회계 분야의 시장 2단계 개방이 추가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83으로 낮아지게 된다. 회계 서비스 분야의 단계별 제한 사항의 완화 내용은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4) 통신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한-호주 FTA에서 통신 서비스의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 유보' 사항이다. 따라서 자유화 후퇴 방지(ratchet) 의무가 적용되고 진전된 자유화 수준은 법령 등의 개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한-호주 FTA를 통한 통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한-미 FTA와 내용상 동일

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 시점이 협정 발효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주요한 내용과 주요 시점은 다음과 같다.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인 2016년 12월 12일까지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이 완전히 완화되어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한 100% 소유가 가능해지며 외국인 지분이 15% 이상인 의제외국인에 대한 지분 제한이 철폐된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FTA와 동일하므로 본 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관련된 국내 제도 및 법령의 변화는 이미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용 대상국이 확대되었고 내용상 추가적 변화는 없다.

- 분야: 통신 서비스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7.2조 및 제11.3조), 시장접근(제7.4조), 현지주재(제7.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 3. 23.)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관련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법률 제12035호, 2013. 8. 13)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법률 제12035호, 2013. 8. 13)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3호(법률 제11690호, 2013. 3. 23)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한-호주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호주 FTA의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에 체결한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2016년 12월 12일이다.

한-호주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의 변화는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다만 한-호주 FT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한국의 제한 사항이 완화되면서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수준이 한-미 FTA 및 한-EU FTA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제한 사항 완화로 통신 서비스의 경우 0.005 감소하여 0.254가 되었다. 여기에 통신 분야의 시장 개방이 추가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25로 낮아지게 된다. 통신 서비스 분야 단계별 제한 사항의 완화 내용은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이 외의 분야(금융 서비스, 로지스틱 서비스(수화물 처리, 통관, 화물 이송, 저장 및 보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호주 FTA 분석 대상 분야의 STRI 변화는 [표 4-3]과 같다.

표 4-3. 한-호주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연도	법률	통신	회계	은행	화물관리	통관중계	화물 이송	보관 및 저장
2010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1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2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3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4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5	0.446	0.225	0.283	0.132	0.164	0.072	0.148	0.104

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한-캐나다 FTA(2015. 1. 1. 발효)

한-캐나다 FTA는 한-미 FTA와 한-EU FTA 이후 한국이 최근에 체결한 높은 수준의 FTA 중 하나이다. 한-캐나다 FTA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은 한-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 방식이다. 양허상의 특징으로는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개방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발효 시점으로 인한 적용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1) 법률

한-캐나다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방식이 포괄주의 방식이다. 또한 법률 서비스의 경우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I 유보' 사항으로 자유화 후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캐나다 FTA를 통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은 한-미 FTA와 동일하므로 본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협정의 발효 시점 및 개방 일정을 따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관련법: 「외국법자문사법」(2009. 9. 26. 제정)
• 분야: 법률서비스 – 외국법 자문사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7조), 현지주재(제9.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법무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캐나다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캐나다법무회사가 한국법무회사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한-캐나다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캐나다 FTA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에 체결한 다른 협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한-캐나다 FTA에 따른 법률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49에서 0.461로 낮아졌다.

2) 회계

한-캐나다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이 포괄주의 방식이다. 또한 회계 서비스의 경우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I 유보' 사항으로 자유화 후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캐나다 FTA를 통한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은 한-미 FTA와 동일하므로 본 절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협정의 발효 시점 및 개방 일정을 따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7조), 현지주재(제9.5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1) 캐나다 내에 등록한 캐나다 공인회계사 또는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캐나다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한국은 캐나다 내에 등록한 캐나다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한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공인회계사가 한국 회계법인의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2) 캐나다에 등록된 캐나다 공인회계사 1인은 한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미만까지 보유한다.
3. 한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한-캐나다 FTA로 인한 회계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캐나다 FTA의 회계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에 체결한 다른 협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한-캐나다 FTA에 따른 회계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3에서 0.294로 낮아진다.

3) 통신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한-캐나다 FTA에서 통신 서비스의 비합치 조치는 '부속서 I 유보' 사항이다. 따라서 자유화 후퇴 방지(ratchet) 의무가 적용되고 진전된 자유화 수준은 법령 등의 개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

한-캐나다 FTA를 통한 통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한-미 FTA와 내용상 동일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의 시점이 협정 발효 시점(2015년 1월 1일)에 따라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 분야: 통신 서비스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1712호, 2013. 3. 23.)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기간통신서비스 허가 또는 별정통신서비스를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부여된다.

기간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까지 보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 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관련 한국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2조(제3호)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한-캐나다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캐나다 FTA의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에 체결한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2017년 1월 1일이다.

한-캐나다 FTA로 인한 통신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 변화는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통신 분야의 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캐나다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3으로 낮아지게 된다. 통신 서비스 분야 제한 사항의 완화 내용은 한-미 FTA 및 한-EU FTA와 동일하다.

이 외의 분야(금융 서비스, 로지스틱 서비스(수화물 처리, 통관, 화물 이송, 저장 및 보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캐나다 FTA 분석 대상 분야의 STRI 변화는 [표 4-4]와 같다.

표 4-4. 한-캐나다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연도	법률	통신	회계	은행	화물 관리	통관 중계	화물 이송	보관 및 저장
2010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1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2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3	0.49	0.259	0.33	0.139	0.17	0.081	0.155	0.111
2014	0.49	0.259	0.33	0.132	0.164	0.072	0.155	0.111
2015	0.461	0.23	0.294	0.132	0.164	0.072	0.155	0.111

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마.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2006. 9. 1. 발효)

한-EFTA FTA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개방이 약속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수준은 다른 최근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개방이 이루어져 전 분야에 걸친 개방의 효과가 있다.

1) 수평적 양허

한-EFTA FTA는 수평적 양허에서 기업내전근자(ICT)의 경우 "입국 및 체류는 최장 3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에 의하여 상기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체류기간의 갱신이 가능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로 인한 인력이동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EFTA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목은 2.3.1항으로 기업내 전근자 체류기간 제한(Limitation on stay for intra-corporate transferees(months))에 대한 답변이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36개월 초과'로 변동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 회계 · 금융 · 통신 · 로지스틱 분야의 동일한 항목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변동되었으며, 각 분야별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서비스의 경우 한-EFTA FTA가 반영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15감소하여 0.475가 되었고 회계 서비스의 경우 0.011만큼 감소하여 0.319가 되었으며, 통신 서비스의 경우 0.005만큼 감소하여 0.254가 되었다. 한-EFTA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된 개방의 확대는 금융이나 로지스틱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상업은행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07만큼 감소하여 0.132로 낮아졌다. 로지스틱 서비스 분야의 경우 수화물 처리(cargo-handling)의 경우 0.006만큼 감소하여 0.164로 낮아졌고 통관 중계(custom brokerage)의 경우 0.009만큼 감소하여 0.072로 낮아졌으며 화물

운송(freight forwarding)의 경우 0.007만큼 감소하여 0.148로 낮아졌고, 저장 및 보관(storage and warehouse)의 경우 0.007만큼 감소하여 0.104로 낮아졌다.

2) 법률

EFTA와의 FTA를 통한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은 부속서 Ⅶ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에 기술되어 있다. 한-EFTA FTA는 EFTA에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시장 개방은 약속하였으나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EU FTA 이후 최근의 다른 FTA와는 달리 국내 법무법인과의 제휴 및 국내 변호사 고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CPC 861) 3)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

한-EFTA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EFTA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되어 EFTA 국가들은 2009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의 공인된 법률전문가가 국내에서 별도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법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11]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로는 2.8.1항과 2.5.1항의 변화가 있다. 2.8.1항은 '외국법 사무 수행을 위한 외국 공급자의 국내 학위, 실무, 시험 이행 요구(Foreign providers

11)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법률시장 개방 약속에 따라 제정된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는 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은 대한민국이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함. 따라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전 이미 발효한 한-EFTA FTA의 경우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적용 대상 국가가 됨.

have to completely re-do the university degree, practice and exam in the domestic country(international law))'로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를 0.014 낮추며 2.5.1항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위한 사전적 또는 영구적 거주 요건(Prior or permanent residency required for license to practice (international law))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0.014 낮춘다. 최종적으로 한-EFTA FTA에 따른 법률 서비스 분야의 STRI는 0.446으로 낮아지게 된다.

회계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비롯한 이 외의 분야(금융 서비스, 로지스틱 서비스(수화물 처리, 통관, 화물 이송, 저장 및 보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EFTA FTA 분석 대상 분야의 STRI 변화는 [표 4-5]와 같다. 주의할 점은 한-EFTA의 경우 2006년에 발효되었으므로 분석 대상인 2010~15년에 추가적인 서비스 규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5. 한-EFTA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연도	법률	통신	회계	은행	화물 관리	통관 중계	화물 이송	보관 및 저장
2010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1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2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3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4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5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바. 한-뉴질랜드 FTA(2015. 12. 20. 발효)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로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다. 한-뉴질랜드 FTA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은 포괄주의를 따

르고 있으나 전반적인 개방 수준은 최근 체결한 FTA에 비해 높지 않다. 인력이동에 관한 추가적인 개방이 있기는 하나 법률 서비스는 한-미 FTA의 2단계에 해당하는 개방만 이루어졌으며 회계 · 금융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반영될 만한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

1) 수평적 양허(모든 분야에 적용)

한-뉴질랜드 FTA는 부속서 9-가에서 기업내전근자(ICT)의 경우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되며, 그러한 입국 및 일시 체류의 근거가 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이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된 조치의 변화는 수평적 변화로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따라서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감소가 나타난다.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뉴질랜드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목은 2.3.1항으로 기업내전근자 체류기간 제한(Limitation on stay for intra-corporate transferees(months))에 대한 답변이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서 '36개월 초과'로 변동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회계·금융·통신·로지스틱 분야의 동일한 항목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변동되었으며 분야별 변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서비스의 경우 한-뉴질랜드 FTA가 반영되기 전과 비교하여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15감소하여 0.475가 되었고 회계 서비스의 경우 0.011 감소하여 0.319가 되었으며 통신 서비스의 경우 0.005 감소하여 0.254가 되었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된 개방의 확대는 금융이나 로지스틱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감소를 가져왔다. 상업은행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07 감소하여 0.132로 낮아졌다. 로지스틱 서비스 분야의 경우 수화물 처리(cargo-handling)의

경우 0.006 감소하여 0.164로 낮아졌고 통관 중계(custom brokerage)의 경우 0.009 감소하여 0.072로 낮아졌으며 화물 운송(freight forwarding)의 경우 0.007 감소하여 0.148로 낮아졌고 저장 및 보관(storage and warehouse)의 경우 0.007 감소하여 0.104로 낮아졌다.

2) 법률

한-뉴질랜드 FTA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에 체결한 다른 협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앞에서 언급한 FTA의 2단계 개방에 해당하는 수준의 자유화만을 약속하였다.

- 관련법: 「외국법자문사법」(2009. 9. 26. 제정)
- 분야: 법률서비스 - 외국법 자문사
-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8.4조 및 제10.5조), 최혜국 대우(제8.5조 및 제10.6조), 현지주재(제8.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12조)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뉴질랜드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뉴질랜드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변화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의 변화는 한-미 FTA 및 한-EU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한국의 제한 사항이 완화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수준이 한-미 FTA 및 한-EU FTA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제

한 사항 완화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475로 낮아지게 되었으며 여기에 법률 분야의 법률시장 2단계 개방이 추가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446으로 낮아지게 된다.

회계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비롯한 이 외의 분야(금융 서비스, 로지스틱 서비스(수화물 처리, 통관, 화물 이송, 저장 및 보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뉴질랜드 FTA 분석 대상 분야의 STRI 변화는 [표 4-6]과 같다. 주의할 점은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으므로 분석 대상인 2010~15년에 추가적인 서비스 규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6. 한-뉴질랜드 FTA를 반영한 연도별 STRI 변화

연도	법률	통신	회계	은행	화물 관리	통관 중계	화물 이송	보관 및 저장
2010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1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2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3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4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2015	0.446	0.254	0.319	0.132	0.164	0.072	0.148	0.104

주: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5장

FTA를 통한 서비스 규제완화와 FDI 유입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1. 분석모형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의 FTA 협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12]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완화해왔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6년(2010~15년)간 칠레를 제외한 OECD 33개 회원국[13] 및 주요 5개 파트너 국가[14]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자료와 한국이 기체결한 6개국과의 FTA[15]를 통해 이루어진 규제완화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많은 국제무역 실증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검증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였다. 중력모형은 Tinbergen(1962)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양국 간의 무역은 양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Tinbergen(1962) 이후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에 의해 중력모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어 최근에는 중력모형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래 중력모형은 양국 간 무역의 결정요인 분석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즉 중력모형에서 종속변수로 무역흐름(trade flows) 대신 외국인직접투자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Wei 2000; Neumayer and Spess 2005; Bénassy-Quéré

12) 외국인직접투자(FDI)란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경영 참여 목적인 경우 10% 미만도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자(또는 기업)가 도입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도 이에 해당하는 반면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또는 채권 등을 사는 것은 간접투자로 분류된다(「외국인직접투자촉진법」 제2조).

13)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14)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15) 한국-미국 FTA, 한국-EU FTA, 한국-호주 FTA, 한국-캐나다 FTA, 한국-EFTA FTA, 한국-뉴질랜드 FTA

Coupet, Mayer 2007; Busse *et al.* 2010; 이승래 외 2015). 제조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에서도 중력모형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Nachum 2000; Kolstad and Villanger 2008; Riedl 2010). 본 연구 역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력모형에 기반한 실증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모형 설명을 중심으로 추정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모형에 이용할 데이터, 즉 FDI, STRI 그리고 기타 주요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2. 분석자료에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추정 방법론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PPML(Poisson Pseudo Maximum Likelihood)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는 중력모형을 활용한 실증 분석 시 로그선형모형(log linear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Santos Silva and Teneyro(2006)에 따르면 기존의 DML 방법은 옌센부등식(Jensen's inequality) 문제에 직면한다. 즉 확률변수에 로그를 취한 값의 기댓값은 기댓값에 로그를 취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16)]

특히 Silva and Tenreyro(2006)에서 언급되었듯이 PPML 추정법은 종속변수에 다수의 0(영)값을 가지는 관측치가 있을 경우 이를 누락시키지 않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식 5-1]에서 보면 PPML 추정법은 종속변수 FDI에 로그를 취하지 않고 추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로그선형모형에 기반한 OLS 추정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할 때 FDI가 0(영)값을 가질 경우 log(0)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관측치를 제거하고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0(영)값을 가지는 관측치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체계적인 이유로 이들 관측치가 0(영)값을 가질 때 이들 관측치를 임의로 누락시킨 후 추정할 경우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로그선형모형에서는 log(0)가 정의되지

16) 즉 $E(\log Y) \neq \log E(Y)$.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Silva and Tenreyro(2006)를 참고할 것.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을 더하거나 비선형 변수 변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비선형 변수 변환 후 추정을 실시할 경우 불일치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ilva and Tenreyro 2006; Tenreyro 2007; Westerlund and Wilhelmsson 2011). 아울러 Silva and Tenreyro(2011)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에 0(영)값이 많은 경우 PPML 추정법이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PML 추정법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역이나 투자 데이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에 강건(robust)하다는 점이다. 로그선형모형 추정 시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면 표준오차 추정치 수정은 가능하나 파라미터 추정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PPML 추정치는 보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일치 추정량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PML 추정법을 이용하는 동시에 강건 표준오차를 사용하고자 한다(Wooldridge 1999; Stock and Watson 2008).

최근 6년간 38개국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은 [식 5-1]과 같다.

$$FDI_{i,t} = \exp\left(STRI_{i,t}^{mean}\beta + X_{i,t}\beta + \alpha_i + \alpha_t\right) + \epsilon_{i,t} \qquad \text{(식 5-1)}$$

여기서 i는 투자국, t는 연도를 의미한다. 즉 $FDI_{i,t}$는 i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t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의미하고, $STRI_{i,t}^{mean}$는 우리나라의 i국에 대한 t년도의 8개 분야[17]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단순 평균을 의미한다. $X_{i,t}$는 i국가의 t년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예: i국가의 t년도 실질 GDP)이고 α_i는 시차불변 국가별 특이성을 통제하는 항목이다. α_t는 시차

17) 법률 서비스, 통신 서비스, 회계 서비스, 금융 서비스, 로지스틱(수화물) 서비스, 로지스틱(통관) 서비스, 로지스틱(화물 이송) 서비스, 로지스틱(저장·보관) 서비스.

별 특이성(time trend)을 통제하기 위한 항목이며 $\epsilon_{i,t}$는 오차항이다.

실증 분석에서는 시차불변 국가별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고 시차별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에서 언급되었듯이 다자적 저항(multilateral resistance)을 통제함과 동시에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국제무역 분야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가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할 때 로버스트 표준오차와 함께 고정효과 PPML모형이 사용되었고 본 연구도 이들 기존 연구를 따르고자 한다(Wooldridge 1999; Feenstra 2004; Stock and Watson 2008; Fournier 2015).

2. 분석자료

계량 분석에서 종속변수로는 상기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FDI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신고금액이며 이들 통계는 외국인투자자가 사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신고금액은 실제 실현된 송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 동향에 대한 지표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신고금액 기준의 통계는 국가별·연도별 구분과 동시에 산업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18]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하려는 한국의 38개 상대국별, 그리고 산업별 및 연도별 패널데이터 구축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유량(flow) 개념의 통계자료로서 서비스 분야 개방이 국가별 FDI의 수준(stock)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FDI 유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본 연구의 취지

18) 산업별로 세분화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제2장을 참고할 것.

에도 부합한다. 아울러 산업별 특이성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 서비스 분야의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사용하였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총 22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국의 서비스무역 제한 수준을 0~1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서비스 분야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8개 서비스 분야를 선별하였다. 8개 서비스 분야는 법률 서비스, 통신 서비스, 회계 서비스, 금융 서비스, 로지스틱스(수화물) 서비스, 로지스틱스(통관) 서비스, 로지스틱스(화물 이송) 서비스, 로지스틱스(저장·보관) 서비스이다.

한국의 STRI를 앞서 제4장에서와 같이 한국이 체결한 6개국과의 FTA를 각기 분석하여 수정된 수치를 FTA 발효 시점에 따라 반영함으로써 연도별로 변동성을 가진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19] 제4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0~15년) 한국의 STRI는 38개 국가에 대해서 연도별로 총 91건[20]의 변화가 있었다. 수정된 STRI는 FTA 협정문상의 규제완화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실제 협정문 내용에 따라 단계별 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변화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기체결 FTA를 반영하여 수정된 STRI 변화는 [표 5-1]과 같다.

[표 5-1]을 보면 법률 서비스, 통신 서비스, 회계 서비스 부문은 6개 FTA 모두에서 STRI 값의 변화를 일으키는 서비스 규제완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 서비스 및 로지스틱 서비스 부문의 경우 한국-미국 FTA, 한국-EU

19) 즉 국가 패널데이터 형태로 STRI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0) 분석 대상 국가 중 EFTA 3개국(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은 데이터상 2010년부터 수정된 STRI 수치가 반영되므로 분석 기간 내에서 변화가 없어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다. 아울러 호주·뉴질랜드·중국과 같이 12월 말에 FTA가 발효되었을 경우 그다음 해부터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연도가 아닌 차기 연도부터 STRI를 수정하였다.

FTA, 한국-캐나다 FTA를 통해서는 STRI 값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비록 서비스 규제완화 시점은 다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EU·캐나다 3개국의 경우 8개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규제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6개 FTA를 반영하여 수정된 STRI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5-1. 기체결 FTA를 반영하여 수정된 분야별 STRI

	한-미 FTA	한-EU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EFTA FTA	한-뉴질랜드 FTA
법률 서비스	0.490 → 0.461 (2012)	0.490 → 0.461 (2011)	0.490 → 0.446 (2015)	0.490 → 0.461 (2015)	0.490 → 0.446 (2006)	0.490 → 0.446 (2016)
통신 서비스	0.259 → 0.230 (2014)	0.259 → 0.230 (2014)	0.259 → 0.225 (2015)	0.259 → 0.230 (2015)	0.259 → 0.254 (2006)	0.259 → 0.254 (2016)
회계 서비스	0.330 → 0.294 (2012)	0.330 → 0.294 (2011)	0.330 → 0.283 (2015)	0.330 → 0.294 (2015)	0.330 → 0.319 (2006)	0.330 → 0.319 (2016)
금융 서비스	0.139	0.139	0.139 → 0.132 (2015)	0.139	0.139 → 0.132 (2006)	0.139 → 0.132 (2016)
로지스틱 서비스 (수화물)	0.170	0.170	0.170 → 0.164 (2015)	0.170	0.170 → 0.164 (2006)	0.170 → 0.164 (2016)
로지스틱 서비스 (통관)	0.081	0.081	0.081 → 0.072 (2015)	0.081	0.081 → 0.072 (2006)	0.081 → 0.072 (2016)
로지스틱 서비스 (화물 이송)	0.155	0.155	0.155 → 0.148 (2015)	0.155	0.155 → 0.148 (2006)	0.155 → 0.148 (2016)
로지스틱 서비스 (저장·보관)	0.111	0.111	0.111 → 0.104 (2015)	0.111	0.111 → 0.104 (2006)	0.111 → 0.104 (2016)

주: ( ) 안은 STRI 수정 연도임.

기타 주요 설명변수로는 중력모형에서 국가 규모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양방향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실질 GDP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실증 분석에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만을 고려하였기에 투자국의 실질 GDP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21] 중력모형의 기본 설명변수 중 하나인 거리변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시차불변 국가 특이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기에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Golub *et al.*(2003)과 Fournier(2015)에서 사용된 요소 비유사성(FD: Factor Dissimilarity)과 규모 유사성(SS: Size Similarity)을 사용하였다. 요소 비유사성은 국가 간 1인당 자본 스톡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Golub *et al.*(2003)에서는 1인당 GDP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요소 비유사성은 [식 5-2]와 같이 정의되고 규모 유사성은 [식 5-3]과 같이 정의된다.

$$FD = \left| \log\left(\frac{GDP_{\text{한국},t}}{\text{인구}_{\text{한국},t}}\right) - \log\left(\frac{GDP_{\text{투자국}i,t}}{\text{인구}_{\text{투자국}i,t}}\right) \right| \quad \text{(식 5-2)}$$

$$SS = \log\left(1 - \left(\frac{GDP_{\text{한국},t}}{GDP_{\text{한국},t} + GDP_{\text{투자국}i,t}}\right)^2 - \left(\frac{GDP_{\text{투자국}i,t}}{GDP_{\text{한국},t} + GDP_{\text{투자국}i,t}}\right)^2\right) \quad \text{(식 5-3)}$$

마지막으로 FTA 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 1이 아닌 경우는 0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변수명 및 변수 단위와 자료 출처는 [표 5-2]와 같다.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실질 GDP, 인구 등

21) 실증 분석모형에 연도 더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GDP를 설명변수로 포함할 수 없다.

의 데이터는 World bank 통계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변수의 스케일 조정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질 GDP 데이터는 로그를 취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5-3]과 같다.

표 5-2. 변수 단위와 자료 출처

변수명	변수 단위	자료 출처
log(제조업FDI)	us 달러 (로그 변환)	산업 통상자원부
log(서비스업FDI)	us 달러 (로그 변환)	산업 통상자원부
log(실질GDP)	us 달러 (로그 변환)	World bank
요소 비유사성 Factor dissimilarity (FD) $(= \left\lvert \log(\frac{GDP_{한국,t}}{인구_{한국,t}}) - \log(\frac{GDP_{투자국i,t}}{인구_{투자국i,t}}) \right\rvert)$	실수	World bank
규모 유사성 Size Similarity (SS) $(= \log\left(1 - (\frac{GDP_{한국,t}}{GDP_{한국,t} + GDP_{투자국i,t}})^2 - (\frac{GDP_{투자국i,t}}{GDP_{한국,t} + GDP_{투자국i,t}})^2\right))$	실수	World bank
법률 서비스 STRI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통신 서비스 STRI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회계 서비스 STRI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금융 서비스 STRI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유통 서비스(수화물) STRI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유통 서비스(통관) STRI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유통 서비스(화물 이송) STIR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유통 서비스(저장·보관) STRI	0과 1 사이의 실수	OECD

자료: 저자 작성.

표 5-3. 변수와 기초통계량

변수명	Obs	Mean	Std. Dev.	Min	Max
log(제조업FDI)	228	6.111	5.343	0	14.569
log(서비스업FDI)	228	6.855	4.988	0	15.339
log(실질GDP)	228	26.911	1.592	23.306	30.437
요소 비유사성 Factor dissimilarity (FD)	228	0.671	0.359	0.016	1.591
규모 유사성 Size Similarity (SS)	228	1.332	0.774	0.693	3.778
법률 서비스 STRI	228	0.472	0.016	0.446	0.490
통신 서비스 STRI	228	0.252	0.012	0.225	0.259
회계 서비스 STRI	228	0.311	0.017	0.283	0.330
금융 서비스 STRI	228	0.138	0.002	0.132	0.139
유통 서비스(수화물) STRI	228	0.169	0.002	0.164	0.170
유통 서비스(통관) STRI	228	0.080	0.003	0.072	0.081
유통 서비스(화물 이송) STIR	228	0.154	0.002	0.148	0.155
유통 서비스(저장·보관) STRI	228	0.110	0.002	0.104	0.111
STRI 평균값	228	0.211	0.005	0.197	0.217
FTA 더미	228	0.588	0.493	0	1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STRI 설명변수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공분산 행렬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에서 주목할 점은 서비스 분야별 STRI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률 서비스 STRI와 회계 서비스 STRI는 상관계수가 0.8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외에 금융 서비스 및 일부 유통 서비스 간의 상관계수는 1로 소위 완전 다중공선성(perfect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기에 이들 변수는 설명변수로 동시에 포함할 수 없다. 비록 그 외의 서비스 분야별 STRI의 경우에는 불완전 다중공선성(imperfect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지만 상관관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분석모형에 동시에 포함하여 추정하면 왜곡된 추정치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서비스 분야별 STRI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우선 전근자의 체류 및 이동에 대한 규제완화 같은 인력이동 관련 수

평적 개방의 경우 위의 서비스 전 분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전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비교적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본 실증 분석에서는 서비스 분야별 STRI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서비스 분야별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식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 모형에서는 주요 8개 서비스 분야 STRI의 평균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비교 목적으로 대안 모형에서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판단된 법률 서비스 STRI와 통신 서비스 STRI를 STRI 평균값 대신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5-4. 분산-공분산 행렬

	법률 서비스 STRI	통신 서비스 STRI	회계 서비스 STRI	금융 서비스 STRI	유통 서비스 (수화물) STRI	유통 서비스 (통관) STRI	유통 서비스 (화물 이송) STIR	유통 서비스 (저장·보관) STRI	STRI 평균값	FTA 더미
법률 서비스 STRI	1									
통신 서비스 STRI	0.419	1								
회계 서비스 STRI	0.805	0.495	1							
금융 서비스 STRI	0.461	0.021	-0.107	1						
유통 서비스 (수화물) STRI	0.461	0.021	-0.107	1	1					
유통 서비스 (통관) STRI	0.461	0.021	-0.107	1	1	1				
유통 서비스 (화물 이송) STIR	0.489	0.0001	-0.110	0.947	0.947	0.947	1			
유통 서비스 (저장·보관) STRI	0.489	0.0001	-0.110	0.947	0.947	0.947	1	1		
STRI 평균값	0.913	0.632	0.801	0.366	0.366	0.366	0.367	0.367	1	
FTA 더미	-0.967	-0.465	-0.925	-0.236	-0.236	-0.236	-0.253	-0.253	-0.906	1

3. 분석 결과

앞 절에서는 산업별 특이성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각각의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가.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표 5-5]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는 본 연구의 기본 모형으로 서비스 분야 규제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8개 서비스 분야 STRI의 평균값을 사용한 모형이고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은 STRI 평균값 대신 FTA 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STRI 평균값과 FTA 더미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두 변수를 설명변수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대안 모형 I에서는 설명변수로 STRI 평균값과 FTA더미를 함께 사용하였고 대안 모형 II에서는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하여 규제완화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된 법률 서비스 STRI와 통신 서비스 STRI를 STRI 평균값 대신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22)]

모형1과 모형5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중력모형인 실질 GDP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이며 모형2와 모형6은 모형1과 모형5에 요소 비유사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3과 모형7은 모형1과 모형5에 규모 유사성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형4와 모형8은 모형1과 모형5에 요소 비유

22) 추정 결과는 [표 5-7]을 참고할 것.

사성과 규모 유사성 모두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기본 모형인 모형1~4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실증 분석의 핵심 관심변수인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1~4 모두에서 음의 값이 나왔으며 계수 값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정되었다. 모형1과 모형3에서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모형2와 모형4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결과를 통해 STRI 평균값 계수 추정치에 대한 분석의 강건성(robust)이 확인되었다.[23] 결론적으로 본 실증 분석에서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통제변수로 사용한 실질 GDP의 계수 추정치는 사전적으로 기대한 바와 같이 모두 양의 값이 나왔으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소 비유사성과 규모 유사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의 모형5~8은 서비스 규제완화 효과와 별도로 FTA 자체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이다. 기대한 바와 같이 FTA더미 변수에 대해 양의 계수 추정치를 얻었으나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양의 값이 나왔으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소 비유사성과 규모 유사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모형1~4와 같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계수 추정치의 크기는 현실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 해석은 계수 추정치의 부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표 5-5.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서비스업 FDI	기본 모형				FTA더미 변수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STRI 평균값	-38.70*** (13.97)	-37.91** (17.91)	-38.56*** (13.51)	-39.16** (16.65)	-	-	-	-
log(실질GDP)	7.09*** (0.97)	7.24*** (1.96)	8.09*** (2.67)	8.07*** (2.84)	6.87*** (1.31)	7.31*** (2.17)	7.87*** (2.72)	7.92*** (2.92)
요소 비유사성	-	0.46 (4.08)	-	-0.35 (3.21)	-	1.38 (4.18)	-	0.80 (3.54)
규모 유사성	-	-	-1.90 (3.96)	-2.07 (2.96)	-	-	-1.90 (3.98)	-1.52 (3.09)
FTA더미	-	-	-	-	0.27 (0.21)	0.25 (0.24)	0.27 (0.20)	0.26 (0.24)
관측치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나.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표 5-6]은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5.3.1절과 마찬가지로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는 서비스 분야 규제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8개 서비스 분야 STRI 평균값을 사용한 모형이고,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은 STRI 평균값 대신 FTA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8에 대한 기타 설명은 5.3.1절과 동일하다.

아울러 대안 모형으로 STRI 평균값과 FTA더미를 함께 사용한 모형과 법률 서비스 STRI와 통신 서비스 STRI를 STRI 평균값 대신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

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24]

우선 본 연구의 핵심 관심변수인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1~4 모두에서 음의 값이 나왔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계수 값이 추정되었다. 모형1 · 모형3은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모형2 · 모형4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실증 분석에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타 통제변수로 사용한 실질 GDP 계수 추정치의 경우 모형1 · 모형2에서는 양의 값이, 모형3 · 모형4에서는 음의 값이 나왔으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소 비유사성과 규모 유사성에 대한 계수 추정치의 경우 각각 음의 값과 양의 값을 얻었으며 일부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5-6]의 모형5~8은 서비스 규제완화 효과와 별도로 FTA 자체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이다. 기대한 바와 같이 FTA 더미 변수에 대해 양의 계수 추정치를 얻었으나 모형6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설명변수의 경우 대부분 모형1~4와 유사한 계수 추정치를 얻었다.

24) 추정 결과는 [표 5-8]을 참고할 것.

표 5-6.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제조업 FDI	기본 모형				FTA더미 변수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STRI 평균값	-39.09** (18.75)	-47.06*** (16.60)	-34.51** (17.47)	-44.77*** (16.09)	-	-	-	-
log(실질GDP)	0.94 (3.12)	0.21 (4.09)	-1.38 (3.75)	-0.28 (4.39)	1.04 (3.39)	0.37 (4.46)	-1.47 (4.01)	-0.61 (4.64)
요소 비유사성	-	-7.28* (4.17)	-	-6.29 (5.72)	-	-6.85 (4.41)	-	-4.95 (5.96)
규모 유사성	-	-	6.01* (3.44)	1.53 (5.09)	-	-	6.43* (3.55)	3.01 (5.28)
FTA더미	-	-	-	-	0.30 (0.19)	0.37* (0.21)	0.27 (0.23)	0.33 (0.22)
관측치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다. 대안모형 분석 결과

여기서는 5.3.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설명변수로 STRI 평균값과 FTA더미를 함께 사용한 모형(대안 모형 I)과 STRI 평균값 대신 법률 서비스 STRI와 통신 서비스 STRI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형(대안 모형 II)의 실증 분석 결과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표 5-7]은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이다. 대안 모형 I에서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음의 값을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더미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5] 대안 모형 II에서 법률 서비스

25) 5.3.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STRI 평균값과 FTA더미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모형의 결과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STRI와 통신 서비스 STRI의 계수 추정치 모두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분야별 STRI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서비스 분야별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식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5-7.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대안 모형

서비스업 FDI	대안 모형 I				대안 모형 II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STRI 평균값	-88.20* (45.81)	-87.92* (45.85)	-88.31* (46.98)	-90.72* (48.36)	-	-	-	-
법률 서비스 STRI	-	-	-	-	-2.65 (9.80)	-2.66 (10.01)	-2.63 (9.66)	-2.81 (9.80)
통신 서비스 STRI	-	-	-	-	-14.15 (8.52)	-14.19 (8.55)	-14.06 (8.66)	-14.67 (8.84)
log(실질GDP)	7.32*** (1.00)	7.35*** (2.01)	8.34*** (2.80)	8.29*** (2.97)	7.51*** (1.11)	7.49*** (2.10)	8.43*** (2.94)	8.38*** (3.09)
요소 비유사성	-	0.10 (4.10)	-	-0.84 (3.11)	-	-0.05 (4.18)	-	-0.96 (3.09)
규모 유사성	-	-	-1.96 (4.08)	-2.36 (3.13)	-	-	-1.80 (4.14)	-2.24 (3.16)
FTA더미	-0.59 (0.54)	-0.59 (0.53)	-0.60 (0.55)	-0.61 (0.55)	-	-	-	-
관측치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표 5-8]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이다. 제조업 분야 역시 서비스업 분야와 유사한 추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안 모형 I에서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음의 값을 갖고 있으며 대안 모형 II에서 법률 서비스 STRI와 통신 서비스 STRI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음의 값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FTA더미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6)]

표 5-8. 제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대안 모형

제조업 FDI	대안 모형 I				대안 모형 II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STRI 평균값	-74.39 (82.23)	-82.38 (78.55)	-62.82 (76.95)	-79.57 (83.47)	-	-	-	-
법률서비스 STRI	-	-	-	-	-4.45 (9.67)	-6.59 (11.03)	-4.21 (10.99)	-6.63 (10.14)
통신서비스 STRI	-	-	-	-	-17.77 (16.61)	-18.85 (15.56)	-15.89 (16.31)	-18.92 (17.04)
log(실질GDP)	0.92 (3.05)	0.24 (4.00)	-1.28 (3.71)	-0.09 (4.40)	1.05 (2.87)	0.42 (3.82)	-0.91 (3.50)	0.47 (4.31)
요소 비유사성	-	-7.28* (4.04)	-	-6.61 (5.86)	-	-7.37* (3.92)	-	-7.48 (6.02)
규모 유사성	-	-	5.78 (3.44)	1.03 (5.38)	-	-	5.24 (3.44)	-0.16 (5.71)
FTA더미	-0.40 (0.85)	-0.40 (0.86)	-0.32 (0.85)	-0.39 (0.89)	-	-	-	-
관측치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강건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6) [표 5-7]의 실증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5-8]의 실증 분석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이들 추정결과는 참고로만 제시하고 자세한 결과 해석은 생략하고자 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본 보고서는 OECD STRI를 한국이 체결한 FTA를 반영하여 새로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한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전 세계 FDI의 흐름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을 Markusen (2002)과 Antràs and Yeaple(2013)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해 보고 현재 한국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한국의 FDI 유입의 특징을 점검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의 흐름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이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FDI 유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이다.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한국의 FDI 유입이 세계적 FDI의 흐름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면도 있으며 바로 M&A의 비중이 Greenfiel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아직 M&A의 비중이 낮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한국의 GDP 대비 FDI 유입 규모가 전반적으로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작은 원인 중 하나라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 확대와 FDI 흐름의 관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FDI는 포토폴리오 투자와 다른 특징을 보이며, 따라서 과거 거시적 측면에서 고려되었던 이자율평형설이나 자본의 한계보수(marginal returns) 이론 등은 현재의 FDI 흐름에 잘 맞지 않는다. Dunning(1977, 1981)의 OLI 원칙과 같은 산업조직 측면의 이론은 거시적 측면의 이론보다 FDI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과 관련된

FDI 분석은 FDI 흐름과 관련하여 설득력이 높고 이론적으로 잘 체계화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 모형을 기반으로 Brainard(1997)의 근접성-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를 설명하였다. 기업의 수출과 FDI 간의 의사결정은 현지 진출을 위한 고정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진출을 위한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단위당 판매가격을 낮출 것인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국가가 법률·회계·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고정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규제가 완화된 국가로 FDI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최혜국 대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한국이 체결한 2015년까지의 FTA를 반영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한국이 OECD 회원국과 맺은 모든 FTA를 반영하였으며 한-EU,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호주, 한-캐나다, 한-EFTA, 한-뉴질랜드 FTA를 법률·회계·통신·금융, 로지스틱스에 대하여 연도별로 새로 도출하였다. 반영 결과 한국은 FTA를 통해 법률 · 회계 · 통신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기준에 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이 외의 분야에서 STRI상의 개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중력모형을 토대로 한국이 체결한 6개국과의 FTA를 반영한 STRI를 이용하여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산업별 특이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업 분야와 제조업 분야를 구분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사전적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

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비스 규제완화가 전 산업에 걸쳐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고정 간접비용을 낮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서비스 및 제조업 FDI가 FTA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절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으로 얻은 결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필요

본 보고서 분석 결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서비스 분야보다는 서비스 전반의 평균적인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동일하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고정비용은 하나의 서비스 비용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법률·회계·통신·금융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의 규제 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개방 수준이 낮은 법률·회계 등의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개방은 FDI 유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제완화의 목적은 규제의 합리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이며 규제의 완전한 철폐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분야는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상품과 달리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문제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다소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친화적이며 경쟁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FTA 추진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 개방 추진

본 보고서 분석 결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FTA 체결만으로는 FDI 유입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최근 주요 FTA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개방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FTA는 상품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WTO 수준에서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무역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FDI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의 FTA 추진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 개방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다국적 기업 FDI에 대한 인식 개선 및 M&A 확대 방안 검토 필요

M&A를 통한 FDI 유입 확대는 실제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한국 경제의 숙제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제2장의 FDI 유입 현황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외국 투자자본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1997~98년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와 관련이 깊으며 현재까지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이 그다지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이 되어가는 현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계 투자 기업 관련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방증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전 세계 교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교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신규 투자(greenfield)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산성 높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기술 확산, 생산성 증대, 고용 확대 등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부정적 국민감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FDI 유입의 순기능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며 FTA 활용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도 어렵다. FTA 등으로 증대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갖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FDI 흐름 점검 및 영향평가 필요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개방이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투자 증가는 성장 동력이 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거시 수준의 분석에서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학계에서도 의견의 합의에 이른 듯하다. 그러나 FDI 유입과 관련하여 산업 수준과 기업 수준의 분석 및 세부 분야별 소비자 후생 등 좀 더 자세한 미시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종덕,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2013.『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성한경. 2015.『주요국 서비스 개방 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5-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2015.『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15-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Anderson, J. E. and Van Wincoop, E.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pp. 170-192.

Antràs, P. and R Yeaple, S. 2013. "Multinational Firms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No. w1877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Bénassy-Quéré, A., Coupet, M., and Mayer, T. 2007.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World Economy*, 30(5), pp. 764-782.

Berger, A., Busse, M., Nunnenkamp, P., and Roy, M. 2013. "Do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Lead to More FDI? Accounting for Key Provisions Inside the Black Box." *International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10(2), pp. 247-275.

Brainard, S. Lael. 1993. "A Simple Theor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with a Trade-off between Proximity

and Concentr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4269.

_____. 1997.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Proximity-Concentration Trade-off Between Multinational Sales and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4).

Busse, Matthias, Jens Königer, Peter Nunnenkamp. 2010. "FDI Promotion through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More than a Bit?" *Review of world Economics,* 146(1), pp. 147-177.

Caves, R. E. 1971.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38(149), pp. 1-27.

Dunning, J. H. 1977.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pp. 395-418. Palgrave Macmillan UK.

_____. 1981.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Feenstra. 2004.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Princeton University Press.

Fournier. 2015. "The Negative Effect of Regulatory Diverg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68. OECD Publishing.

Frankel, M. 1965. "Home Versus Foreign Investment: A Case Against Capital Export." *Kyklos*, 18(3), pp. 411-433.

Helpman, E., M. Melitz and S. R. Yeaple. *2004.*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1).

Hymer, S. 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Vol. 14, pp. 139-155. Cambridge, MA: MIT Press.

Kemp, M. C. 1964. "The Pur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rentice-Hall.*

Kindleberger, C. P. 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The International Executive,* 11(2), pp. 11-12.

Kolstad, I. and Villanger, E. 2008.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ervic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4(2), pp. 518-533.

Krugman, P. 1980. "Scale Economi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0(5), pp. 950-959.

Lesher, M., & Miroudot, S. 2006.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Investmen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MacDougall, G. D. A. 1958. "The Benefits and Cost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Economic Record,* Vol. 36.

Markusen, James R. 2002. "Multinational Firm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MPRA Paper 8380.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Germany.

Melitz, M. J.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71(6), pp. 1,695-1,725.

Nachum, L. 2000. "Economic Geography and the Location of TNCs: Financial and Professional Service FDI to the US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1(3), pp. 367-385.

Neumayer, E. and Spess, L. 2005. "Do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3(10), pp. 1567-1585.

Nicoletti, Giuseppe, Stephen S. Golub, Dana Hajkova, Daniel Mirza and Kwang-Yeol Yoo 2003. "The Influence of Policies on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ECD Economic Studies*, No. 36, pp. 7-83.

Pearce, I., & Rowen, D. C. 1966. A Framework for Research into the Real Effects of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Essays in Honour of Macro Fanno ed. T. Bagiotti, Pavova.

Riedl, A. 2010. "Location Factors of FDI and the Growing Services Economy1." *Economics of Transition,* 18(4), pp. 741-761.

Silva, J. S. and Tenreyro, S.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pp. 641-658.

_____. *2011.* "Further Simulation Evid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Estimator." *Economics Letters,* 112(2), pp. 220-222.

Simpson, P. B. 1962. *Foreign Investment and the National Economic*

Advantage: A Theoretical Analysis. US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Abroad. University of Oregon Books, Eugene, United States.

Stock, J. H. and Watson, M. W. 2008. "Phillips Curve Inflation Forecasts." No. w1432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enreyro, S. 2007. "On the Trade Impact of Nominal Exchange Rate Volatil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2(2), pp. 485-508.

Tinbergen, J.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Rconomic Policy.* Books (Jan Tinbergen)

Wei, S. J. 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pp. 1-11.

Westerlund, J. and Wilhelmsson, F. 2011. "Estimating the Gravity Model Without Gravity Using Panel Data." *Applied Economics,* 43(6), pp. 641-649.

Wooldridge, J. M. 1999. "Distribution-free Estimation of Some Nonlinear Panel Data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90(1), pp. 77-97.

[온라인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16. 8. 24).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6. 8. 26).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8. 18).

부록

주요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수준 비교

OECD는 회원국의 서비스 무역 장벽에 대한 정량화 작업을 2007년 6월 시작하였으며 2014년 5월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40개국(OECD 34개국 및 6개 주요 파트너) 18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OECD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 및 대상 국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4년도 지수 발표 이후 2015년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지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수 산출 방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산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관련 보고서나 김종덕, 성한경(2015)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 회계 · 통신 · 금융 · 로지스틱스 분야(통관, 저장 및 보관, 수화물 처리, 화물 이송)에 대한 한국의 개방 수준과 추가적인 개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을 제시한다.

먼저 사업 서비스 중 전문직 서비스에 해당하는 법률 그리고 회계 서비스의 경우 개방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경우 OECD 평균보다 개방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요 상대국을 포함한 경우에도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 중에서 특징적으로는 룩셈부르크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으로는 법률시장이 전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개방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가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개방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과 회계 등의 사업 서비스는 외국인투자 유입 시 회사 운영을 위한 간접비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개방도를 보이고 있는바,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한 추가 자유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법률과 회계 서비스의 경우 한-미 FTA, 한-EU FTA 등 최근 FTA를 통한 추가 개방이 있었다.

통신 서비스는 한국의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큰 값을 보이며 주요 상대국을 포함한 평균보다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통신 서비스는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한 추가 자유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고 실제로 한-미 FTA, 한-EU FTA등 최근 FTA를 통한 추가 개방이 있었다.

은행 서비스와 보험 서비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로 본 한국의 금융 서비스 개방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은행 서비스와 보험 서비스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 회원국들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보다 작으며, 특히 보험 서비스의 개방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들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실제로 한-미 FTA, 한-EU FTA등 최근 FTA를 통한 추가 개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로 파악한 로지스틱스 분야(통관, 저장 및 보관, 수화물 처리, 화물 이송)의 한국의 개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네 가지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화물 이송(freight transfer)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야에서는 개방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BOP (Balance of Payment) 기준 서비스 교역 통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개방 수준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한-미 FTA, 한-EU FTA등 최근 FTA를 통한 추가 개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1-1. 법률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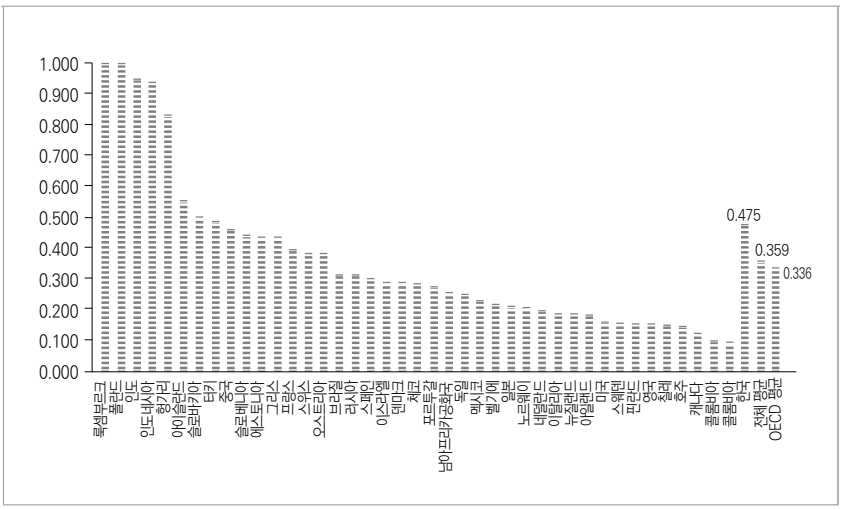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2. 회계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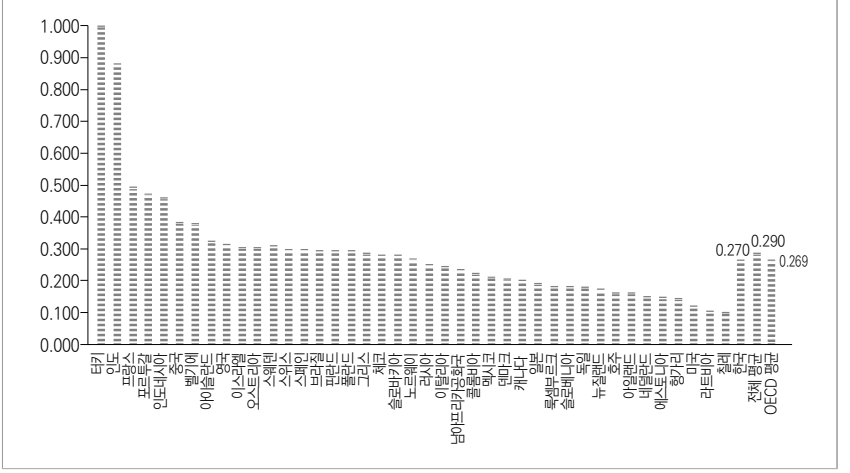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3. 통신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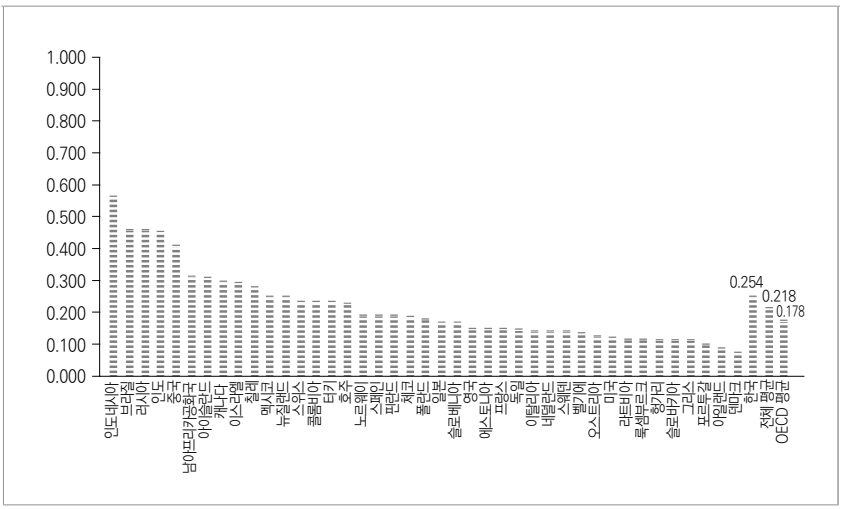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4. 은행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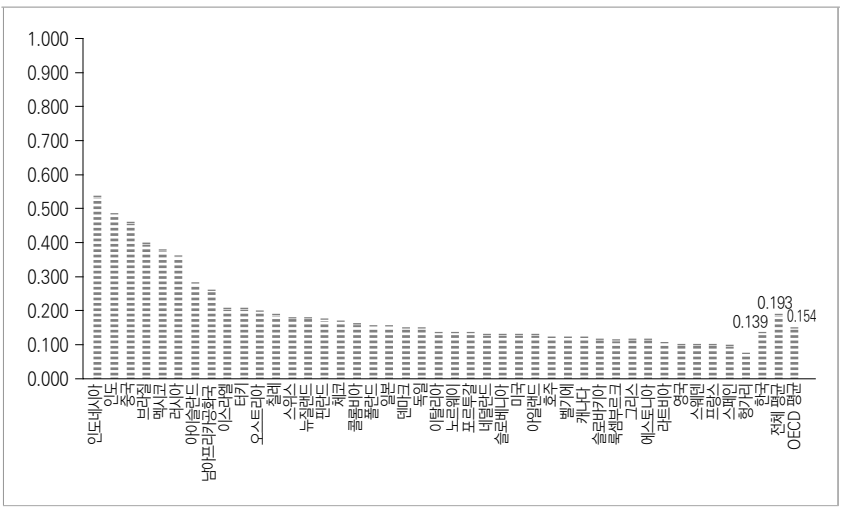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5. 보험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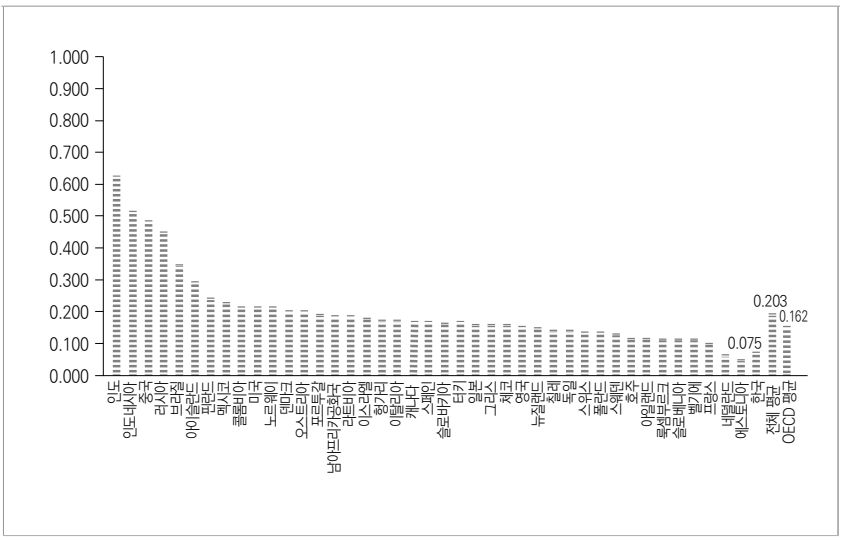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6. 로지스틱스 통관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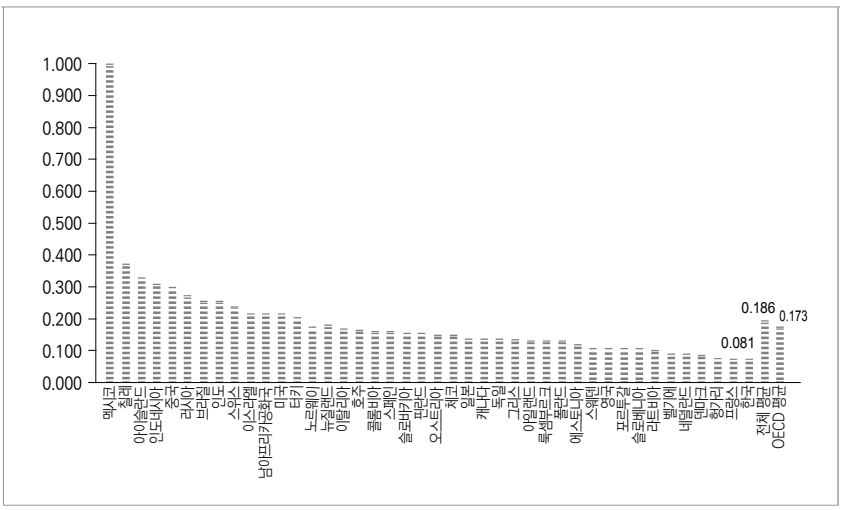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7. 로지스틱스 저장 및 보관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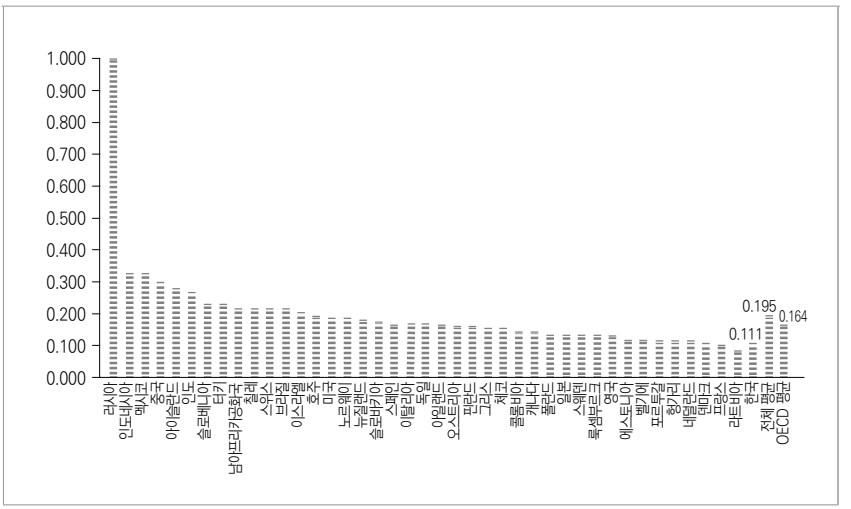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8. 로지스틱스 수화물 처리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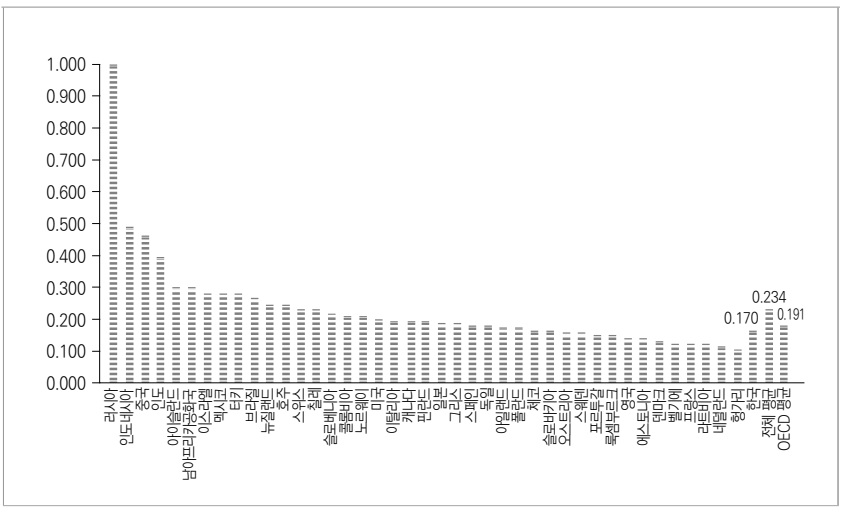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부록 그림 1-9. 로지스틱스 화물 이송 서비스 개방 수준 비교(STR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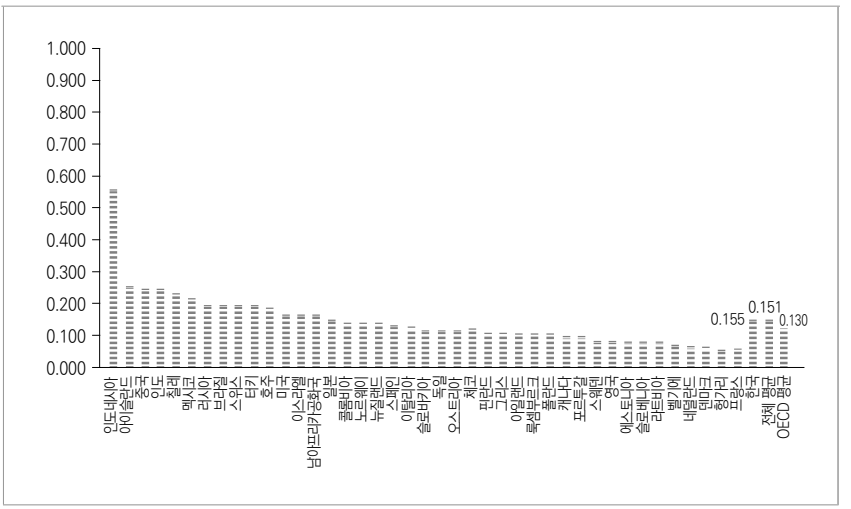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검색일: 2016. 7. 20).

Executive Summary

Reduction of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 Services Sectors and its Impact on FDI Inflows: Focused on STRI

KIM Jong Duk, CHO Moonhee,
EOM Jun Hyun, and CHUNG Minchirl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reduction of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 services sectors in Korea using recent free trade agreements in effect and studies its impact on FDI inflows. The research outcomes provide three main findings as follows.

First, FDI inflows of Korea closely follow the trend of global FDI flows. FDI inflows to Korea from developed economies have appeared dominant; FDI inflows from the U.S., Japan and European economies account for the major share. The increase of FDI inflows from China is significant. Moreover, the FDI inflow shares of capital-intensive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 chemical, and machinery in manufacturing and financial, distribution, and business in services are also large. The fact that FDI inflows in services have become two times larger than those in manufacturing since early 2000's is noteworthy. In the meantime, while FDI flows in forms of M&A in most developed economies, M&As as a form of FDI are still less prevalent in Korea.

Second, Korea's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provided by the OECD are updated and recalculated reflecting the FTAs recently

put in force. Further liberalization through recent FTAs in force is identified in legal, accoun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ird, this report analyzes the impact of services liberalization on FDI inflows in Korea. As suggested in theoretical predictions, further services liberalization through FTAs plays a positive role in FDI inflows in Korea. Such outcomes are derived not only in services sectors but in manufacturing sectors as well.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임수호 · 이효영 · 최장호 · 최지영 · 최유정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16-13 SDG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김종혁 · 권혁주 · 천소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민지영 · 강부균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찐저 · 쉬원지 · 위즈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鮮半島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强一) · 삐야오인쩌(朴恩哲)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国統一と日本経済) / 후카오 쿄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権赫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Анализ затратывыгоддл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 제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 스베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종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편주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전재성 ·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김종덕(金鍾德)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im.jd@kiep.go.kr)

저서 및 논문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공저, 2014)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 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외

조문희(趙文熙)

연세대학교 경영학(부:경제학) 학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mhcho@kiep.go.kr)

엄준현(嚴畯鉉)

고려대학교 국제법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heom@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공저, 2014)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 리스크와 대응 방안』(공저, 2016) 외

정민철(鄭旻澈)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연구원
(現, E-mail: mcch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후생효과 분석: 수입다양성 증가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6-05

Reduction of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 Services Sectors and its Impact on FDI Inflows: Focused on STRI

KIM Jong Duk, CHO Moonhee, EOM Jun Hyun, and CHUNG Minchirl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의 구조 변화에 따라 과거 관세감축 위주의 통상 협정은 점차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보고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최근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미 FTA, 한–EU FTA 이후 체결된 협정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규제 완화를 계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규제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한국의 경우 얼마나 부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94320
9 788932 216201

ISBN 978–89–322–1620–1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